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운영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책임자: 최준열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운영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책임연구원 : 최준열

공동연구원 : 박삼철

연구보조원 : 강윤정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농어촌 교육정책 연구의 기반	7
1. 농어촌 학교 및 학생수 감소 현황	7
2.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원리	15
3.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접근 전략	19
4. 농어촌 교육정책의 대상 : 분석의 틀	21
III.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33
1.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33
2. 정책 목표별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38
3. 국가 수준 농어촌 교육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43
IV.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49
1.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개관	49
2.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	51
3.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	63
4.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91
V.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 관련 조례 분석	101
1. 시 농어촌교육 관련 조례	101
2. 도 농어촌교육 관련 조례	118
3. 농어촌 교육 관련 조례의 시사점	143

VI. 요약 및 제언	145
1. 요약	145
2. 제언	147
참고문헌	152

표 차례

<표Ⅱ-1>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1965-2023)	7
<표Ⅱ-2> 전국의 권역별 초등학교 수 변화 추이(1970-2023)	9
<표Ⅱ-3> 2023년 전국 농어촌 소재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수 및 재학생 수	12
<표Ⅱ-4> 충청남도의 학교급별 변화 추이(2022~2026)	14
<표Ⅱ-5> 전라북도의 학교수 대비 작은 학교 현황(2022)	15
<표Ⅱ-6> 농어촌 A 초등학교의 4계절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25
<표Ⅲ-1> 농어촌 교육정책 목표별 주요 사업 내용	43
<표Ⅳ-1>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지원 조례	49
<표Ⅳ-2>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지원 조례	50
<표Ⅳ-3> 2021~2023년 작은 학교 지원 예산 총액	73
<표Ⅳ-4> 2021-2023년 연도별 지원 학교수 및 지원 예산	73
<표Ⅳ-5> 경북교육청 2023년 자유학구제 학교의 예산 지원	78
<표Ⅳ-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세부과제별 2021년 추진 계획	82
<표Ⅳ-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세부과제별 2022년 추진 계획	83
<표Ⅳ-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세부과제별 2023년 추진 계획	85
<표Ⅳ-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교육여건 취약 지역학교 운영지원 연 도별 소요 예산	86
<표Ⅳ-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교원 근무여건 개선 연도별 소요 예 산	87
<표Ⅳ-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통학버스 운영 지원 연도별 소요 예 산	87
<표Ⅳ-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연도별 소요 예산	88
<표Ⅳ-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장애학생 교육지원 연도별 소요 예 산	88
<표Ⅳ-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89
<표Ⅳ-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공공놀이터 설립 추진 연도별 소요	

예산	89
<표IV-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89
<표IV-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89
<표IV-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 연도별 소요 예산	90
<표IV-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90
<표IV-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연도별 소요 예산	90
<표IV-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연도별 소요 예산	90
<표IV-22> 시도별 농어촌 교육활성화 관련 종합계획 명칭 및 주요 내용	91
<표IV-23> 교육청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92
<표IV-24> 시도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	93
<표IV-25> 교육청의 교원 지원 프로그램 사례	94
<표IV-26>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사례	94
<표IV-27>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95
<표IV-28>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96
<표IV-29>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96
<표IV-30>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98
<표IV-31>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98
<표IV-32> 시의 교육지원 조례	144
<표IV-33> 도의 교육지원 조례	144

그림 차례

[그림 II-1] 1965-2023 동안의 초등학생수 변화 추이	8
[그림 II-2] 1965-2023년까지의 전국 권역별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	10
[그림 II-3] 1965-2023년까지의 호남권역 초등학생수 변화 추이	11
[그림 II-4] 농어촌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 모형	22
[그림 IV-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계획의 기본 구조	8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물결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유발하였음. 일 자리와 자녀 교육, 주거 편의성 등을 쫓아 농어촌 거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계속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농어촌 지역을 공동화하였음.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의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최근들어 농어촌 학교는 전국적인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농어촌의 1개 면에 1개의 초등학교도 유지하기 어렵거나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수가 총 30명도 되지 않은 지역도 출현하기 시작함.
- 농어촌 학생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를 양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 소규모 학교들이 증대하게 되자 교육정책 당국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2023년 3월 1일 현재 3,922교가 폐교되었음. 이는 전체 2021년 기준 20,759교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수임.¹⁾
- 농어촌의 학생수가 줄고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농어촌의 학교들은 학생수가 줄어 적절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농어촌의 학교들이 정상적인 교육력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자녀를 가진 농어촌 주민들은 그 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황폐화 현상은 더욱 심화됨.
- 교육부의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한 측면에서 보면 합리성을 갖는 적절한 접근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음. 교육력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는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하여 일정 규모의 학교로 재편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시키자는 논리성을 갖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성립될 전제 조건은 더 이상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임. 미국 등의 사례에서는 광산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재편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인구감소가 특정한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변화된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학교의 교육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 그러나

1)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3.10.

한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학교들을 정책적으로 통폐합하였기 때문에 재편된 적정규모 학교들이 또다시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거나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 요약하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적정규모로 재편한 학교들이 다시 통폐합되거나 통폐합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며, 전국적인 대규모 학교통폐합 정책은 오히려 학교가 사라지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농어촌 지역의 계속되는 학교 소규모화와 교육력 열악화 문제 상황을 인식한 교육 당국에서는 2000년 들어 새로운 접근을 하기 시작함. 즉, 학교를 통폐합하기 보다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수혜적 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음.
- 예를 들어, 지역의 교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아이들을 보낼만한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짐. 2003년부터 한시적으로 전개되었던 농어촌 우수교 육성사업(1군 1우수교 육성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농어촌 초등학교의 경제적 및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의 대폭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전원학교 사업과 돌봄학교 사업 등이 그 예가 될 것임. 그 외에도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사업, 초중통합학교 지원사업, 지역거점 학교 육성사업 등 농촌의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 이러한 농어촌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농어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력이 우수한 학교를 지역에 만들자는 것이었음.
- 이처럼 2010년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의 다양한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주도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면서 지역의 농어촌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음. 전라남도의 농어촌 교육진흥 방안(2002), 강원도의 농산어촌 및 폐광 접적지역 지원(2010) 등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지역의 농어촌 교육정책 사례라 할 것임.
-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사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강한 힘을 가질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임(윤정일외, 2015). 따라서 당시에는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웠으며,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을 지역에 맞도록 조정하고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이 대부분이었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에서 배부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은 이에 상당한 정도의 대응자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 등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음. 또한 지역의 농어촌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조건도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정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2010년을 지나며 교육의 지방자치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교육의 문제가 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농어촌 학교와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농어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나 관련 연구는 물론 종합적인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도 매우 미미한 실정임.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교육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수준과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각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지역에 맞는 농어촌 교육정책을 수립 및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의 정책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농어촌 교육 지원의 문제는 지역 교육청 수준을 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이기 때문이다.
- 지역 교육청에 의존하여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전국적 규모의 농어촌 지역 상황 분석 및 연구 등이 미흡하여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전국적 일관성 결여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규모가 큰 투입 비용을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농어촌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원 정책 아젠다 발굴은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임. 특히,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3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국가 수준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임. 즉, 전국의 약 600여 개의 아주 작은 초등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11,372명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도시의 학교나 대규모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유의미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이 감당할 사안은 아니며,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공동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임.

- 우리 국가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아주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차별받지 않는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즉, 농어촌의 아주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큰 학교나 도시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의 과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을 누릴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임.
- 이런 점에서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 할 것임. 교육배려 계층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 사항일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 수준과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임.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 수준의 주요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농어촌 지원 정책의 효과와 지원 영역 등을 설정함. 둘째,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농어촌 학교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함. 셋째,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분석을 통하여 농어촌 학교 지원 방향 및 내용 등 현황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한 정책 지원 현황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과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교육정책 연구 기반 분석
 - 농어촌 학교 현황
 -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원리
 -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접근 논리
 - 농어촌 교육정책의 대상: 분석의 틀
-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 농어촌 학교 육성 지원 정책 분석: 196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주요 정책 분석
- 농어촌 학교 효율화 정책 분석: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 분석
-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정책 현황 및 분석
 -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지원 법령 분석(조례 규칙)
 -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지원 사업 현황 파악 및 분석
 -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지원 정책 분석
- 국가 수준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농어촌 교육정책 제언
 -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제언
 - 교육부 수준에서의 교육정책 제언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농어촌 교육정책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의 내용 정리
 - 농어촌 현황
 -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접근 논리
 -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원리
 -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의 틀
- 교육청 정책 담당자 면담
 - 교육청의 농어촌 교육 담당자를 면담하여 농촌 교육정책 특색, 추진과정의 어려운 점, 개선점 파악
 - 2024. 1. 15(월). 11:0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면담
 - 2024. 1. 26(금). 11:00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면담
 - 2024. 1. 29(월). 11:00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 주무관 면담
 - 2024. 1. 29(월). 15:00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 주무관 면담
 - 2024. 1. 30(화). 11:00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면담
 - 2024. 2. 19(화). 10:00 충북교육청 주무관 면담
 - 2024. 2. 19(화). 15:00 경기교육청 장학사 면담

- 2024. 2. 23(금). 11:00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면담

○ 워크숍 개최

-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의 특성 분석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II. 농어촌 교육정책 연구의 기반

1. 농어촌 학교 및 학생수 감소 현황

- 농어촌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간략하게 농어촌 학교 및 학생수 감소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 있음.
-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와 그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학교수 감소 등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재활력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가. 농어촌지역 학생수의 변화

1)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 <표Ⅱ-1>에는 1965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여년 동안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가 요약되어 있음.
-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70년에 초등학생 수가 약 5,749,3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약간씩 감소하다가 2010년을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3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약 2백60만 명에 불과함. 1980년도의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감소 현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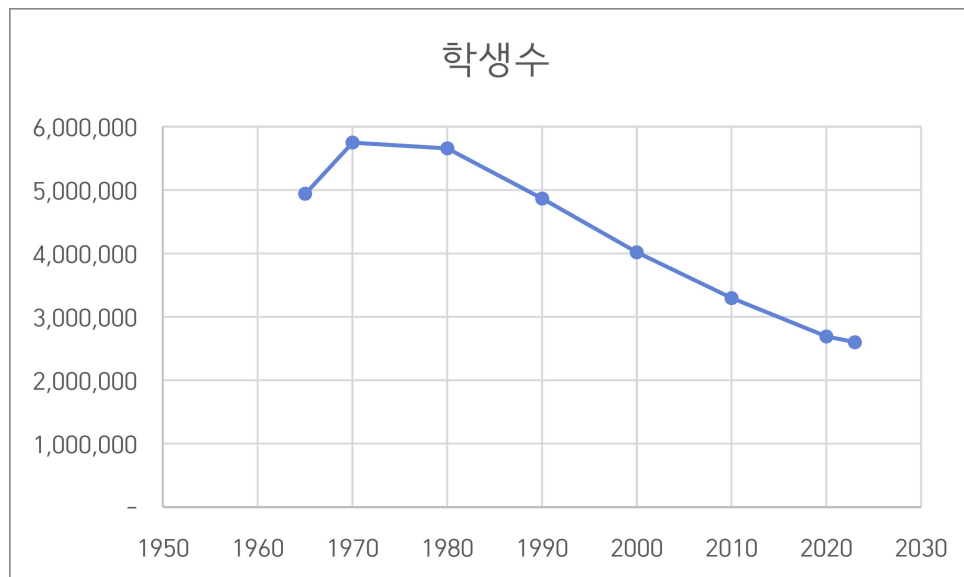
<표Ⅱ-1>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1965-2023)

단위: 명

년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1965	20,551	4,895,976	24,818	4,941,345
1970	12,872	5,671,201	65,228	5,749,301
1980	16,225	5,569,402	72,375	5,658,002
1990	15,840	4,783,205	69,475	4,868,520
2000	11,720	3,955,856	52,415	4,019,991
2010	10,558	3,244,936	43,600	3,299,094
2020	8,697	2,647,300	37,719	2,693,716
2023	8,131	2,556,520	39,278	2,603,9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의 자료에서 발췌함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 60여 년 동안의 학생수 변화를 그래프로 묘사하면([그림Ⅱ-1] 참조) 더욱 명료하게 학생수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70년대까지 증가하던 초등학교 학생수는 1980년까지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함. 1980년과 1990년의 10여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 정책의 결과 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하였음. 1990년에서 2000년의 10여 년 동안은 학생수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임. 그 기간 동안 약 80만명 이상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초등학교 학생수는 약 400만명에 불과하게 됨.
- 전국적인 초등학교 감소 현상은 이후의 10년 동안도 계속됨. 즉, 2000년~2010년까지의 10년 동안에도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약 70만명 이상이 감소하여 약 330만 명에 불과하게 됨.
- 급기야 2020년을 지나며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260만 명 정도로 축소되었음. 이는 1970년의 학생수인 5백 60만 여명의 약 50%에 불과함.
-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는 농어촌의 학교의 소규모화, 학교 동폐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였음.
- 비록 학교 통폐합을 통해 일시적으로 적정규모 학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학생수 감소 경향에 따라 또 다시 소규모 학교로 축소되거나 혹은 통폐합되었거나 통폐합될 운명에 놓인 수많은 학교가 있음.



[그림Ⅱ-1] 1965-2023 동안의 초등학생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2)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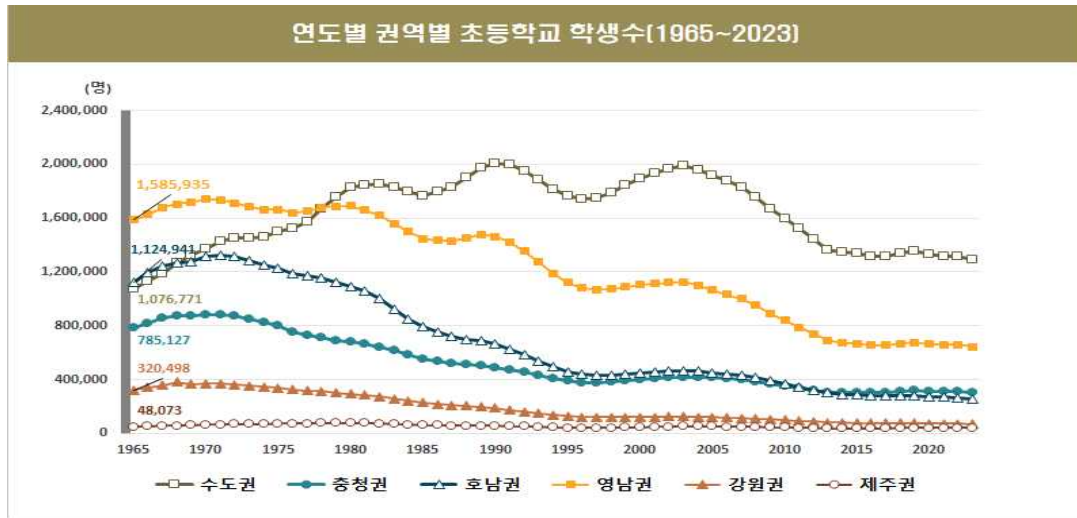
- 이 상에서 소개한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 현상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농어촌 학교 정책 대상 및 지역적 필요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러한 지역적 학생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Ⅱ-2>와 같음.

<표Ⅱ-2> 전국의 권역별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1970-2023)

년도	학생수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1970	5,749,301 (100)	1,375,716 (100)	883,741 (100)	1,315,080 (100)	1,739,719 (100)	370,844 (100)	64,201 (100)
1980	5,658,002 (98.4)	1,826,922 (132.8)	681,390 (77.1)	1,089,836 (82.9)	1,691,247 (97.2)	292,446 (78.9)	76,161 (118.6)
1990	4,868,520 (84.7)	2,006,097 (145.8)	490,441 (55.5)	664,639 (50.5)	1,463,196 (84.1)	188,114 (50.7)	56,033 (87.3)
2000	4,019,991 (69.9)	1,894,193 (133.7)	401,450 (45.4)	450,180 (34.2)	1,104,777 (63.5)	122,613 (33.1)	46,778 (72.9)
2010	3,299,094 (57.4)	1,597,545 (116.1)	352,443 (39.9)	366,608 (27.9)	838,666 (48.2)	99,797 (26.9)	44,035 (68.6)
2020	2,693,716 (46.9)	1,328,195 (96.5)	314,544 (35.6)	273,485 (20.8)	663,439 (38.1)	73,478 (19.8)	40,575 (63.2)
2023	2,603,929 (45.3)	1,290,006 (93.8)	305,048 (34.5)	256,074 (19.5)	642,972 (37.0)	69,298 (18.7)	40,531 (63.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의 자료에서 발췌함'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 이 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Ⅱ-2]와 같음. 이 표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3년의 전국 초등학교 학생수는 1970년의 약 45%에 불과함.



[그림 II-2] 1965-2023년까지의 전국 권역별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가) 수도권 학생수 변화 추이

- 수도권의 학생수는 1970년의 약 1백 37만명 정도에서 1990년에 약 200만명 정도로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약 1백 30만명의 수준으로 1970년의 94%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에서 추리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정은 타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1980년~1990년 사이에 많이 이주해 왔을 것이라는 것임. 제주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초등 학생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급격하게 학생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임.

나) 충청권 학생수 변화 추이

- 충청권역의 경우, 1970년에 88만명 정도였던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970년의 34.5%에 불과한 약 30만명 정도에 불과함. 특히,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의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 수는 약 88만명 정도에서 49만명 정도로 약 45% 정도가 감소함. 이 당시에 충청권역 인구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음.

다) 호남권 학생수 변화 추이

- 호남권의 경우 학생수 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함. 1970년에 1백30만명 정도였던 초등학교 학생수가 2023년에는 약 25만 6천 여명에 불과하여 1970년의 약 20%에 불과함.



[그림 II-3] 1965-2023년까지의 호남권역 초등학생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 [그림 II-3]에는 호남권역을 광주, 전남, 전북 지역으로 구분하여 학생수 변화 동향이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음.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약 20여년 동안 전체 학생수의 절반이 넘는 50% 이상의 학생수가 감소됨. 1985년 이후 일시적으로 광주광역시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의 학생수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에 전남과 전북 지역의 학생수는 이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함. 따라서, 호남 권역에 수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지역이 공동화와 황폐화된 것은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추측됨. 2023년에는 기준년도인 1970년과 비교하여 약 19.5% 정도의 학생수만을 보이고 있음.

라) 영남권 학생수 변화 추이

- 영남권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수는 1970년에 약 1백 73만 명 정도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기준년도인 1970년의 약 37% 정도인 64만명 정도임. 이 권역은 1990년도까지는 전체 학생수의 약 84%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남. 즉, 2010년에는 기준년도인 1970년 학생수의 약 48%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38% 정도까지 감소하였음.

마) 강원권 학생수 변화 추이

- 초등학생의 감소 현상을 권역별로 분석할 때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난 곳이 강원권임. 즉, 이 권역의 경우, 기준년도인 1970년에 약 37만명 정도의 초등학생

들이 재학하고 있었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급격하게 학생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1990년에는 기준연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음. 이후에도 학생수 감소 현상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2023년에는 기준년도인 1970년 학생수의 약 18.7%에 불과한 69,298명에 불과함.

나. 농어촌 학교 수 감소 및 학교의 소규모화

1) 전국의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수 및 학생수

-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수가 감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러한 학생수 감소는 또한 필연적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혹은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었음. 그동안 전국적으로 3천 개 이상의 학교들이 통폐합되었으며, 그나마 존치되고 있는 학교마저도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음.
- 다음 <표Ⅱ-3>에는 2023년의 전국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교수 및 재학생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또한 20명 이하, 30명 이하, 60명 이하 등 학생수로 구분된 ‘학교 규모별 학교 수와 재학생 수’를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어촌 학교의 규모 및 학생수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표Ⅱ-3> 2023년 전국 농어촌 소재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수 및 재학생 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재학 학생 수	
	학교수	전체 학교 대비 %	학생수	전체 학생 대비 %
20명 이하	271	11.02	3,919	0.90
21명~30명 이하	291	11.83	7,453	1.71
31명~60명 이하	763	31.02	33,741	7.76
소계	1,325	53.86	45,113	10.37
61명 이상	1,135	46.14	389,836	89.63
총계	2,460	100	434,949	100

* 이 표에서의 농어촌이란 전국의 읍면 및 특수지역을 포함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의 자료를 재구성함.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2,460개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에는 434,949명의 초등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음.
- 전체 학교 중에서 학생수 61명 이상의 학교는 전체의 약 46%에 해당하는 1,135개교임. 이 중에는 비록 행정구역상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의 대규모 학교라 할 수 있는 재학생 수 1천명 이상의 학교도 있음. 일부 대규모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를 경험하면서 힘겹게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체 학교 중에서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은 1,325개교로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약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45,113명으로 전체 농어촌 학생의 10.37%에 해당함.
- 이러한 통계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 지역 전체 학교의 54%에 해당하는 1,325개의 학교에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만이 재학하고 있다는 것임. 즉 60명 이하의 단위학교 당 학생수는 약 34명 정도에 불과함. 반면에 60명 이상 학교의 단위학교당 학생수는 약 343명 정도임. 따라서 같은 읍이나 면지역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농어촌의 학교 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20명 이하 학교, 21~30명 학교, 31명~60명 학교로 구분하여 보면,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즉, 31명~60명까지의 재학생이 있는 초등학교가 전체 농어촌 초등학교의 약 31%에 해당하는 763개 교임. 이처럼 농어촌 초등학교의 약 1/3정도가 30명에서 60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21명~30명까지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약 11.8%에 해당하는 291교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는 전체 농어촌 학생의 약 1.7%에 해당하는 7,453명임.
- 전체 재학생수 20명 이하의 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약 11%에 해당하는 271개교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전체 농어촌 학생의 약 0.9%에 해당하는 3,919명임.
- 교육개발원 통계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장 작은 학교의 학생수는 4명으로 전국에 3개의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고 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전체 농어촌 학교의 약 54%에 해당하는 1,325개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이들 학교에 전체 농어촌 학생의 약 10.4%에 해당하는 45,113명이 재학하고 있음.

2) 지역별 초등학교 학교 수 현황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학생수 감소가 뚜렷한 충청권과 호남권 등 2개 권역에 속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사례 확인을 통해서 전국 농어촌 지역의 학교 현황을 추론하고자 함.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분석한 2022년~2026년 사이의 학교급별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증가 추이가 <표Ⅱ-4>에 제시되어 있음.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충청남도교육청 관내의 전체 학교 중에서 30.7% 정도인 작은 학교 수가 4년 후인 2026년에는 약 3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즉, 2022년에 전체 학교 수 724개 중에서 작은 학교가 222개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함. 그러나 2026년에는 전체 학교의 약 35% 정도인 265개 학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약 33개 학교가 작은 학교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학교급에 따라 소규모화 경향은 다른 추이를 보임. 즉, 초등학교 급에서 더욱 급격한 학교 규모 축소 현상을 나타냄. 즉, 초등학교의 경우 2022년에 전체 학교 421개 중에서 약 40%인 170개 학교가 작은 학교였으나, 4년 후인 2026년에는 전체의 약 47%인 206개 학교가 작은 학교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표Ⅱ-4> 충청남도의 학교급별 변화 추이(2022~2026)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작은 학교	초	170(421)	175(424)	191(427)	201(436)	206(438)
		40.4%	41.3%	44.7%	46.1%	47.0%
	중	51(186)	51(186)	52(188)	54(192)	57(194)
		27.4%	27.4%	27.7%	28.1%	29.4%
	고	1(117)	1(118)	1(118)	1(118)	2(120)
		0.9%	0.8%	0.8%	0.8%	1.7%
총계		222(724)	227(728)	244(733)	256(746)	265(752)
		30.7%	31.2%	33.3%	34.3%	35.2%

출처: (2022~2026)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19쪽.

- <표Ⅱ-5>에는 전라북도의 작은 학교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학교의 약 40%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이며, 3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도 전체 학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급별로 작은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전체의 약 48%에 해당하는 204개 학교가 60명 이하의 학교이며, 중학교는 40% 정도인 85개교가 작은 학교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4.3%에 해당하는 19개 학교만이 작은 학교임. 이처럼 다른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가 훨씬 더 작은 학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작은 학교와 3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의 거의 대부분인 95% 이상이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들임. 이처럼 농어촌 학교의 ‘작은 학교화’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

<표Ⅱ-5> 전라북도의 학교수 대비 작은 학교 현황(2022)

구분	전체 학교수	60명 이하 학교수		30명이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	학교수	%
초	426	204	47.9	105	24.6
중	211	85	40.3	65	30.8
고	133	19	14.3	10	7.5
총계	770	308	40.0	180	23.4

출처: 2023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안), 전라북도교육청 내부자료.

2.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원리

-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분명한 원리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원을 위한 접근 원리에는 지속성의 원리, 종합성의 원리, 공정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및 대응성의 원리 등을 포함함. 이러한 농어촌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원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리

- 농어촌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성임(sustainability).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구감소 현상, 교육적 상황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됨. 법적 제도화 등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단기간의 집중적인 지원 사업은 그 사업이 추진되는 당시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사업 기간의 종료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회귀되거나 혹은 더 상태가 악화되기도 함.

- 그동안 한국의 국가 수준 농어촌 지원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자주 있었음. 예를 들어,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 혹은 1군1우수고 사업 등과 같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계획·추진되었던 3년의 한시적 사업들은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함(박삼철, 2008).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조용히 종료되곤 하였음.
- 호주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원 프로그램(Country Areas Program)을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도서벽지 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열악한 교육력을 보존하기 위한 접근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원 사업을 단기성 혹은 한시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과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속성의 원리가 강조됨.

나. 종합성(포괄성)의 원리

- 종합성의 원리란 교원과 학생, 교육과정, 시설 등 학교의 교육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 학교의 교육활동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교육지원은 이러한 교육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 교육의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이 부족하게 되면 교육활동의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됨. 따라서 농어촌의 학교교육이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함께 구비되도록 해야 함.
- 농어촌 학교에 대한 종합적 혹은 포괄적 지원이 되기 위한 주요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음.

- 교직원 지원 영역
- 학생 지원 영역
-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영역
- 시설 및 설비 지원 영역 등

- 이와 같은 농어촌 학교들을 위한 지원 영역들이 종합적으로 동시에 지원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인 농어촌 교육 지원 영역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함.

- 요약하면, 농어촌 학교 지원 정책은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종합성 혹은 포괄성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다. 공정성의 원리: 교육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적 접근 필요성

- 공정성(Equity)이란 ‘교육의 기회균등 중에서 과정의 평등이란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과 원리’라 할 수 있음. 즉, 공정성이란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Sergiovanni, Kellerher, McCarthy & Wirt, 2004). 따라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도시와 농어촌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Sergiovanni 등에 의하면 학교교육의 공정성 원리란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 주는 것(equal chance to win)”을 의미한다고 함(p. 7).
- 도시의 큰 학교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농어촌 학교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농어촌의 학교에 보다 많은 자원을 공급하여 두 상대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공정성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재정 정책도 공정성의 차원에서 배분되고 있음. 즉, 한국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들이 도시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투입되고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보통 교부금 지급의 상대적 차이를 넘어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농어촌의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라. 특수성 및 자율성의 원리

-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열악화는 그들의 상대 학교인 도시학교와의 동일한 조건에서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요인임. 따라서 도시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농어촌의 학교와 학생들은 도시학교의 학생들에게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 자명함. 따라서 농어촌의 학교들은 각자의 상황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세 번째 원리는 학교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인

정하는 것임. 즉, 농어촌의 학교들은 도시학교와는 매우 다른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최소한의 국가 수준 및 지방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특수성의 원리가 강조되어야 함. 농어촌 학교의 자율성이란 선택권(choice)의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의 교육정책 당국의 기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혹은 기회와 관련되어 있다. 즉, 최소한의 준수 기준 이외의 광범위한 학교교육 영역에 대한 권한을 농어촌 학교에 부여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학교의 자율성 범위를 극대화할 때,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본능적 성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마. 대응성의 원리

-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아젠다 개발 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원리로는 대응성의 원리를 포함해야 함.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지역 사회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함. 즉, 농어촌의 학교와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응해서 적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대응성의 원리라고 함.
- 예를 들어 먼 통학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음. 1~2명의 소수 학생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바우처 제도 혹은 기타 제한 요소들을 풀어주어 적시에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아동의 가정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여건이나 환경을 극도로 방해하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각 처리해 주는 등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응성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임.
- 농어촌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가정적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임. 따라서 대응성의 원리를 요약하면, 단순히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일정한 수준의 지원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는 탁상공론식 행정적 접근이라기보다는 ‘필요한 학생과 학교에 필요한 만큼을 적시에 지원’해 주는 일종의 맞춤형 지원 전략이라 할 것임.

3.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접근 전략

- 농어촌 교육발전 지원 정책 아젠다 개발 및 정책 수립의 접근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 접근 전략임. 이 전략은 농어촌 학교들이 도시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어촌 학교교육의 특성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농어촌의 학교들은 도시의 학교와 동일한 잣대에 의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학교들을 배려하는 접근 전략임.
-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적(economics of scale) 접근 방법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만드는 방법임.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규모로 육성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접근 방법임.
- 세 번째 접근 전략은 교육복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임. 이 전략은 교육배려 계층에 속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방법임. 즉, 농어촌 학생들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 농어촌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그들의 학습여건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게 됨. 따라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는 접근 전략임. 소위 'Equal chance to win!'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농어촌 학교 및 학생들을 도시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접근 전략이 여기에 해당함.

가. 자연주의적 접근 :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과 차별성 강조

- 자연주의적 접근 방법이란 자연주의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농어촌 학교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교육적 특수성을 가감없이 반영하여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임(박삼철, 2010). 사실, 동일한 평가 요소와 기준에 의해 도시의 학교와 경쟁할 때, 농어촌 작은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에, 자연적 환경과 조건에서 농어촌 학교들이 그들만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도시의 학교들과 구분되는 교육력을 갖게 될 것임. 세계적 대안학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서머힐 학교의 교육적 접근 방

법 등이 이러한 자연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라 할 것임.

- 따라서 자연주의적 접근을 추구하는 농어촌 작은 학교의 핵심적인 교육목표는 단순한 지식 중심(knowledge-based)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지혜 중심(wisdom-bases)의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최근의 문제해결력 중심, 상황과악력, 협력적 태도, 문학적 상상력 등의 핵심 역량은 이러한 지혜의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계발될 수 있다고 함(박삼철, 2010).

나. 규모의 경제적 접근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 강조

- 두 번째 접근방법은 규모의 경제적 측면(economics of scale)에서 소규모 학교의 비경제적 측면과 교육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임. 따라서, 교육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수준의 규모로 학교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접근 전략임. 이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일정 규모의 학생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
- 적정규모의 학교란 학생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 예를 들어 중등학교(High school)의 경우 500명 정도를 적정규모 학교로 규정하기도 하며, 300명 정도의 학생수를 가진 초등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규정한 연구가 있음(Leithwood & Jantzi, 2009). 그러나 적정규모의 학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학계의 합의된 의견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정규모의 학교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는 120명, 혹은 60명 등의 학생수를 적정 규모로 규정하기도 하였음.
-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학교급에 따라 적정 학교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임. 즉,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규모가 커야 하며,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규모가 커야 학교급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임(박삼철, 2014).
-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를 지나며 국가 수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적 접근 사례임.
- 그러나, 경제 원리에 근거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강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적절한 접근 전략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기저에 깔린 기본 전제는 ‘지역의 학생 수 불변’이라는 점임. 즉 특정 지역에 학생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규모의 경제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든다고 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수 감소와 학교의 소규모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함.

- 이처럼,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계속된 학생수 감소 현상은 그 학교들을 다시 소규모 학교로 변화시키고 통폐합의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따라서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규모의 경제적 관점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몰락과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불합리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것임.
-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지역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육성 정책보다는 작지만 강한 교육력을 갖춘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음.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4장에서 논의됨.

다. 교육복지적 접근 : 교육배려 대상인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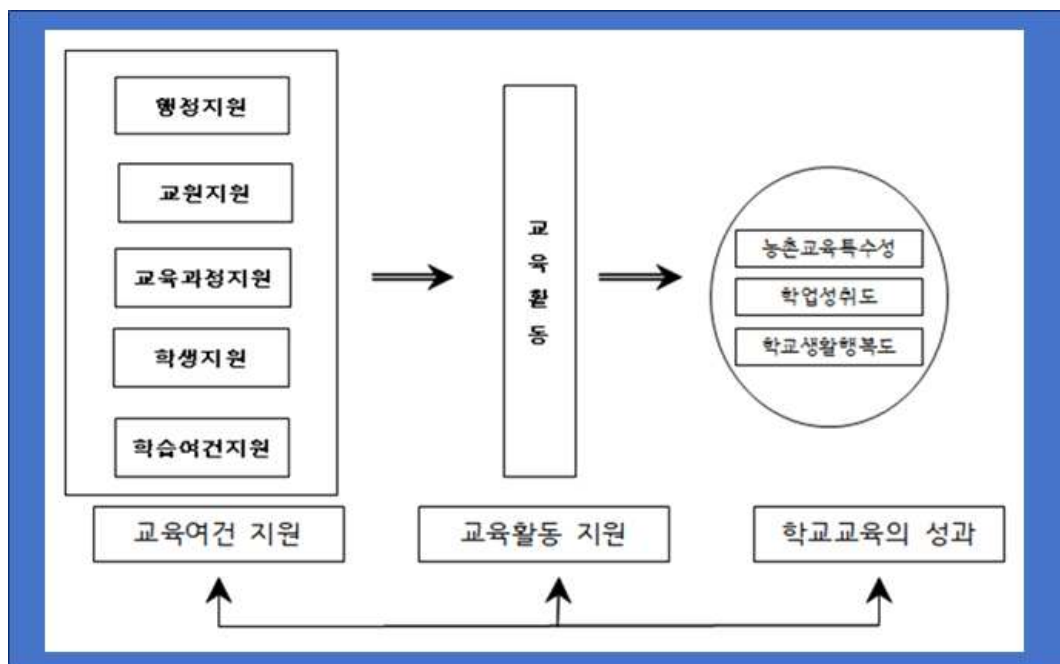
- 세 번째 접근 방법은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관점임.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 농어촌의 학생들은 교육적, 문화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공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정적 및 경제적으로도 그들의 상대 학교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음.
- 이러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생활 환경은 계속해서 학습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여건 및 교육환경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교육복지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접근 관점임.
- 이러한 교육복지적 접근은 농어촌 학생들이 갖는 헌법적 권리의 성격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즉, 모든 학생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교육의 과정적 접근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임.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교육복지적 접근 관점은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

4. 농어촌 교육정책의 대상 : 분석의 틀

-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어촌의 학교교육 상황은 계속적으로 열악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촌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악화를 가져오게 되

고,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몰락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됨. 따라서 지속성, 종합성, 대응성과 특수성 등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근본 원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이란 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접근(Total Approach)해야 함. 학생과 학교, 교원 및 교육내용 등 교육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농어촌 학교교육의 여건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어촌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주요 지원 영역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다음 [그림 II-4]와 같음.



[그림 II-4] 농어촌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 모형

가. 교육여건 지원 영역

1) 행정 영역 지원

-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농어촌의 수많은 학교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임.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도 도시의 대규모 학교와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학교 행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학교에 배치된 적은 수의 교직원들이 학교의 모든 행정행위를 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

- 이러한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학생지도와 관련된 행정업무 이외의 학교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음.
- 꼭 필요한 공문 이외의 공문에서 해방하기
 -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 이외 업무 지원 : 학교에서 꼭 해야 하는 업무 이외의 행정행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지원 인력을 통해 처리하기

2) 교원 영역 지원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원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 즉, 교원의 결집된 교육 역량이 학교교육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것임. 마찬가지로 농어촌 학교도 그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절대적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농어촌 학교가 나름대로의 효과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 관련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 조건임. 또한 그러한 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농어촌의 교원들은 대도시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혹은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음. 학생지도에서 오는 일반적인 기대감과 성취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시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지도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음. 무엇보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전문성 개발 혹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인적 교류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전문성 개발의 정체감을 경험하게 됨.
- 대체로 교원들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말미암아 농어촌 학교 근무를 꺼리게 됨. 따라서 농어촌 근무의 불리함과 어려움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인가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별도의 지원 제도는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농어촌 학교의 교원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것임. 한국뿐 아니라 농어촌 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한결같이 농어촌 교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은 농어촌 학교에 근무해야 할 교원들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도시의 학교와 농어촌의 학교는 주어진 환경 요인과 학생 구성,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구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근무하던 교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인사명령에 의해 농어촌 학교로 배치되고 있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착오를 겪는 교사, 도시 학생과는 다른 상태에 놓인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등이 많이 있다고 함.
- 따라서 농어촌 교사를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사범대학에서는 농어촌 학교교육의 특수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또한 각종 교직원 연수에 농어촌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할 필요 있음.
- 농어촌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내용으로는 다학년 구성 학급 경영론(multi-aged class management), 소인수 학급 교과지도법, 복수학급 교재 개발 및 교과지도법, 개별화 학습지도법, 지역사회의 이해와 학습전략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농어촌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거나 검토해 볼만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벽지학교 근무 기간 승진 가산점 제도
 - 벽지학교 근무 수당 현실화
 - 농어촌 학교를 근무지로 선택 시 우선 임용 제도 운영
 - 장기 교육실습생의 농어촌 학교 실습 기간 의무화
 - 농어촌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 농어촌 주택 임대 보조금 지급 등
 - 농어촌 지역의 삶에 익숙한 교원 우선 배치 등
 - 작은 학교의 학교장 초빙교장제 전면 실시
 - 전일제 혹은 방과후 돌봄 등과 같은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에서 교원 배제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3) 교육과정 영역 지원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지원은 농어촌이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시

의 학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이는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 학교들이 도시학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음. 이를 통해 도시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활동의 전개와 교육경험을 제공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비교적 최근에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작은학교’ 만들기 사업 등에 보고되고 있는 교육과정들은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프로그램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매뉴얼화 하여 많은 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농어촌의 학교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로 모든 학교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임. 따라서 농어촌의 학교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경쟁 구도에 의해 몇몇 학교만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농어촌 학교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상대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의 박탈감과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임.
- 따라서, 모든 농어촌의 학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지원 과제를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함. 즉, 선정 위주의 경쟁 중심 사업에서 모든 학교들이 참여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중심 사업체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교육없이 기초학력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학습지도
 - 주변의 자연 환경과 함께하는 친화적 건강 및 체육 활동
 -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이 주는 감성적 정서를 기르는 심미적 활동
 - 24시간 365일 학생들의 성장을 돌보아 주는 방과후학교
 -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학교 경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교육활동
 - 자연과 함께 하는 인적성 교육
 - 4계절의 변화와 함께 어울리는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표Ⅱ-6> 농어촌 A 초등학교의 4계절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봄철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 봄에 피는 들꽃 관찰 - 보리 베기 - 쭉떡, 화전 만들기 - 모 심기, 산나물 채취, 보리 구워 먹기 - 상추, 오이, 호박 가꾸기 - 시골 장터 구경하기
여름철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 주변 자연환경 생태 체험 (산나물캐기, 물고기 잡기 등) - 감자, 고구마 등 재배하기 - 별자리 은하수 등 관찰하기 - 원두막 생활 체험하기 - 논, 밭 김매기 등
가을철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 벼 베기, 메뚜기 잡기 - 허수아비 만들기 - 인절미, 송편 만들기 - 콩 타작, 콩 구워먹기, 감 따기, 밤 줍기 - 가을에 피는 들꽃 관찰하기
겨울철 자연 체험활동 사례
- 눈사람 만들기, 눈썰매 만들기, 스케이트 타기, 팽이돌리기, 연 만들기 등 - 새끼 꼬기, 솟대 만들기 - 우유 짜기, 치즈 만들기 - 고구마 구워먹기 등

-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함께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여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운영 방법을 또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무학년제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어울림 수업과 같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농어촌 작은 학교의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음.

- 교직과정 이수자 혹은 농어촌 교사 대상 복식학급 수업 방법론 강화
- 복식수업 방법 연수 강화
- 농어촌 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부족한 교원 확보를 위한 순회교사제 확대 시행

4) 학생영역 지원

-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예를 들어, “농어촌 거주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지역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 등이 있으며,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가정 형편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한 기숙사 지원과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생계 지원 등이 있음.
- 농어촌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지원 내용임이 명백함.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교육복지의 개념과 영역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음. 농어촌 학생의 교육복지를 정의한 임연기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농어촌 학생의 교육복지란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불이익이나 결손을 완화 내지는 해소시켜 그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의미한 교육경험 제공과 이를 위한 제반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정의를 보면,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란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결손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다양하고 유의미한 교육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는 활동 등을 포함함.
- 첫째, 농어촌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학업성취도와 학업의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유의미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잠재적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둘째, 제반 교육여건이란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요소들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을 지도할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시설과 설비 등이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정도의 수준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교육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있어야 함.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결손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 영역은 ① 지적 발달 영역, ② 기초생활 보장 영역, ③ 안전 및 보호 영역, ④ 정서 발달 영역, 그리고 ⑤ 사회성 발달 영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들 5개의 학생 지원 영역은 농어촌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어려움 및 가정적 환경과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배려해야 할 지원 영역임.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1차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가

능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5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농어촌 학생들의 지적 발달 지원

- 농어촌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위한 영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나아가 수월성 있는 학습 경험 제공, 높은 수준의 성취도 등 학교 교육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 농어촌의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여야 하며, 나아가 높은 수준의 성취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선택 가능한 다양한 과목과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경쟁과 협력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기반 마련, 우수한 교원 확보 등이 포함됨.

나)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그들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다음은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가능한 내용들임.

- 건강 관리와 보건 위생 문제
- 결식이 없도록 식사 제공
- 필요한 경우 24시간 돌봄 환경 마련 등

다) 농어촌 학생들의 돌봄

- 농어촌 학생들의 돌봄 문제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복지의 영역임.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학교 밖의 생활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돌봄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완전할 경우에 아동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이들은 어느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의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해야 함. 학생들의 돌봄 영역에 포함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아이들의 학교생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로움과 왕따,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을 위한 상담과 생활지도 등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 혹은 성폭력 예방 지도 및 보호 관찰 등

라) 사회성 발달을 위한 학생 지원

- 농어촌 학생들에게 가장 취약한 발달 영역은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영역임. 작은 학교와 학급에서 매일 마주치는 학생들이 동일하며, 지역사회의 어른들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임.
- 학생들이 바른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각종 지원 노력이 이루어져 함. 농어촌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정도는 미래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공중도덕 및 예절 교육
 - 가정에서의 예절 및 관계 정립
 - 국가와 사회적 가치관 함양
 - 직업교육 및 직업선택을 위한 경험 학습 기회 제공
 - 지역사회의 역사와 지역 이해, 각종 봉사의 필요성 등

마) 자아존중감 발달 등 정서 함양 지원

- 농어촌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정서 발달 등 건전한 정서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함. 농어촌의 학생들은 대체로 정서적 측면의 발달 미흡, 자아정체성과 존중감 등의 발달 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이런 측면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서발달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농어촌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발달 및 정서발달을 위하여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정서발달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 기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지원 방안(contingency plan)

- 미성년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이고 1차적인 조건은 부모의 돌봄과 지도임.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위기의 상황이 학생들에게 찾아올 수 있음. 즉, 돌보아 주던 보호자가 갑작스런 상황에 처하여 아동들을 돌보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의식주 문제 등 삶의 기본 조건에 치명적 위기가 찾아오게 됨.
- 물론 제도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복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혜를 받기 위한 서류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도와주기 어려

운 경우도 발생함.

- 이처럼,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긴급하게 우선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아동 위기 대응 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 있음. 이는 농어촌 학생뿐 아니라 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임.

5) 학습여건 지원

- 농어촌 학교의 학습여건을 지원하는 영역은 크게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지원과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학습 조건을 구비해 주는 것을 의미함.
 - 대체로 농어촌의 학교는 도시학교에 비해 열악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원과 학생들이 시설과 설비 문제에 의한 수업 결손이나 수업 지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함.
 - 농어촌 학교의 학생 및 교육상황과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를 신·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임. 필요에 따라서는 어학실과 방송실, 도서실과 기숙사 등을 여러 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지역의 공동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계속해서 소규모화되어 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학교에 시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의 의문이 들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군을 구성하고, 학교군을 중심으로 각 학교별로 분산적 시설 및 설비 구축을 하여 공동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공동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학교군을 구성하고, 학교군을 중심으로 각 학교 별로 분산적 시설 및 설비 구축
 -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공동 시설 및 설비 확보 및 활용

나. 교육활동 지원 영역

- 교육활동 지원 영역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함. 즉,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예를 들어, 학교군 구성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들이 함께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이는 학습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학습자 구성을 통해 소규모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수업을 할 수 있음. 또한, 전문 지식과 지도 방법이 필수적인 합

창연습이나 체육활동, 기술가정 실습, 과학 수업의 경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수업을 전개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화상회의 장비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웃 학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혹은 요일을 정하여 통학버스를 활용하여 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 수업하는 경우도 있음.

- 학교군 구성을 통한 공동 수업 운영
- 음악과 미술 등 특정 교과목의 경우, 이웃 학교와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실시간 공동 수업
- 요일별로 특정 수업을 위해 통학버스를 활용하여 한 학교에 모여서 수업

다. 교육성과 확인

- 농어촌 학교의 교육성과 평가는 적어도 세 영역에 대한 교육 결과를 확인함. 농어촌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여부, 기초학력 증진 여부와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행복도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 등임.

1)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

- 첫 번째는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임. 농어촌 학교의 교육성과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여부
-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기회 확대를 반영한 특기적성교육
-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경험 제공 등

2) 학업성취도

- 농어촌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는 도시학교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임. 농어촌의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학원에 가기 어려우며, 보충 수업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일 수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 학업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개별화된 수업 지도를 하고 그 성취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
-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반영한 개별화된 보충 수업 지도

- 복식수업 학급 편성을 통한 속진 학생들의 수월성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3) 학교생활 행복도

-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즐거워 하고 있는지, 자신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친구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 만족도 측정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

- 학교의 돌봄과 정서지도의 충분성
- 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즐거움
- 학교생활을 통한 성장과 발달 만족도
- 학교 교육활동의 만족도
- 선생님과 의 학습활동 만족도
- 친구들과 의 학습 만족도 등

Ⅲ.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그리며 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국가의 산업화와 함께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음. 또한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남.
-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와 황폐화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은 학교의 소규모화와 학교 통폐합 현상을 가속화 시켰으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촌 현상 가속과 학교의 통폐합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 이러한 농어촌의 교육문제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특히, 2000년 대 이후 교육부 주도로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 본 장에서는 우선 해방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개되었던 농어촌 교육정책을 살펴 봄. 제2절에서는 정책의 목표 및 대상에 따라 전개되었던 각종 농어촌 교육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함.

1.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가. 해방 이후~1950년대 :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

-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국가 건국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음. 이에 국가에서는 1953년부터 1958년까지 6년에 걸쳐 초등교육의무화 정책을 추진함. 이를 통해 국가의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됨.
-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인 약 8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였으며,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따라서 농어촌 교육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음.

나. 1960~1970년대 : 중등교육기회 확대와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 노력

- 이 시기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수요와 확대 현상이 출현하였음. 또한 초등학교 의무화가 정착되면서 중학교 입학 수요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초등학교 졸업생 수의 증가에 따른 중학교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가 재정으로 필요한 공립 중학교의 설립이 어려웠음. 이에 정부에서는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사립 중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사립중등학교 설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됨. 이들 사립학교는 농어촌의 중등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1970년대를 지나며 국가의 산업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면서 농어촌의 많은 주민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됨. 8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던 60년대를 지나 1970년대 후반에는 농어촌의 인구가 약 50% 정도에 머물게 됨. 이에 따라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반대로 농어촌의 학교들은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1980년대를 거치면서 농어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적어지게 됨.
- 도시의 인구집중과 농어촌의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격차도 심화되기 시작함. 즉, 도서 벽지의 근무여건 열악화로 교원들은 그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정부에서는 1967년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교원들의 도서벽지 지역 근무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1967년에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시 학교에 비해 교육격차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 법은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유일한 제도로 유지되었음. 당시의 주요한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음.

-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중등교육 수요에 대응함
- 1967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도농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 및 해소를 위해 노력
- 1969년 중학교 무시험입학제 시행으로 중학교까지 교육기회 확대 계기 마련

다. 1980~1990년대 :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 학교 내실화 추진

- 이 시기는 1970년대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경제적 발전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기임. 농어촌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향해서 이주해 갔으며, 농어촌의 인구는 더욱 축소되어 감.

-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였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수도 감소되어 여러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그야말로 농어촌 교육의 어려운 상황과 이에 따른 대응 필요성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라 할 수 있음.
- 1982년에 처음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교통폐합이 시작된 이래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학교통폐합 정책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었음.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학교통폐합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빚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학교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립하게 됨. 하나는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주장으로 한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의 정주여건이 더욱 나빠져 결국은 지역이 소멸될 것이며, 통학거리와 기타 부가적 경비를 고려할 때 재정적 효율성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함. 이와 반대로 교육정책 당국 등의 주장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학교들을 통폐합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임(박삼철, 2014). 이러한 양자의 주장은 서로의 양보와 타협없이 평행선을 그으며 지속되었으며,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사회적 갈등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음.
- 이러한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심의 학교통폐합 정책은 1990년대와 2000년을 지나며 절정에 달하였음. 전국적으로 분교장 폐교를 포함하여 모두 5,000여개 이상의 학교들이 통폐합되었음(박삼철, 2014).

- 학교통폐합정책 출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라. 1990년대 이후 : 5.31 교육개혁조치와 교육복지적 접근

- 계속되던 농어촌의 인구 감소율이 저하되기 시작함. 2000년을 맞이하면서 농어촌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에 낮아짐.
- 1995년 5월 31일 국가의 미래 교육 방향을 설정한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됨. 이 개혁안에 근거하여 다양한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됨. 특히 농어촌 교육에 대한 단순한 지원적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농어촌 교육을 바라

보는 계기를 마련함. 물론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학교통폐합 등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 사업도 보다 탄력적으로 수행되었음.

- 또 한 가지 농어촌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1994년부터 시작된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조치임. 중학교 의무화는 그 후 2002년에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
- 1995년 5.31교육개혁안의 발표와 함께 농어촌 교육정책의 관점이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함.
- 1994년부터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함. 이후 중학교 의무화는 2002년에 전국으로 확대.

마. 2000년 이후 :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 및 교육복지 강화 정책

- 2000년 이후 농어촌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개의 접근 방향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짐. 첫째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 강화였음.

1)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

-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은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농어촌 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해 ‘돌아오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농어촌’ 등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주를 이룸.
- 대표적인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으로는 학교군 사업, 1군1우수고 사업과 농어촌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학교와 전원학교, 기숙형학교 등의 사업이 있음.

2) 농어촌 학교 및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사업

- 2000년 이후 국가적으로 고도의 경제적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이 부각되기 시작함. 즉, 국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혜 계층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서는 상대적 빈곤에 처한 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됨.
- 교육의 영역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즉,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도시와 농어촌의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e.g. 임연기 · 이태상 · 권동택, 2007). 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에 교육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농어촌 학생들의 가정 요인, 지역사회 문화적 상황 열악, 학교 규모의 소규모화 등임. 이들 변인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축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도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함.

- 지역 차이에 따른 교육의 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농어촌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한 두 가지의 변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 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임.
- 5.31 교육개혁조치는 교육정책 당국이 농어촌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방향성 확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었으며, 교육의 분야에서도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교육복지 정책들이 출현하기 시작함.
- 교육당국에서는 각종 교육복지사업, 농어촌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군 사업 혹은 농어촌 우수교 사업 등과 같은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함.
- 정부 주도의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한시성을 가진 사업이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였음. 3년의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도 교육청의 사업으로 이관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으로 이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결국 그 사업들은 교육부의 지원 종료와 함께 점차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됨.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한 교육부의 정책들은 사업이 추진되는 당시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남. 그러나 사업 기간이 끝난 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각종 후유증이 나타나게 됨. 예를 들어, 지원금의 종료와 함께 지속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교원과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학교와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외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학교를 떠나는 교원과 학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음.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주체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됨. 즉,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 중복 지원 혹은 지원 누락 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부서별로 구분·지원하는 행정 지원 방식을 수정하여 ‘농어촌 지원 통합지원 센터(가칭)’ 등과 같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바. 2010년 이후의 시도교육청 중심 농어촌 교육정책

- 지방자치제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농어촌의 학교 관련 사항들도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각종 사업들도 지방교육청 중심으로 계획되고 추진됨. 자세한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학교 지원정책은 다음 장에서 분석됨.

2. 정책 목표별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 이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국가 수준 농어촌 교육정책을 지원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1960년대까지 농어촌 지역의 계몽운동 성격인 사회교육 정책이 전개되었으며, 점차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음.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의 경제력 및 교육격차가 심화되자 교육양극화 극복을 위한 접근이 있었음.
- 구체적으로 농어촌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적 지원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음. 즉,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학생들을 보낼만한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여 도시로 유학가는 학생들을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음. 또한 농어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보며 지도할 수 있는 돌봄학교와 전원학교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 이러한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발전 지원 사업들을 지원 영역별 사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가. 농어촌 계몽운동

- 해방 이후 산업화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였음. 따라서 당시의 상황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운동이 전개되었음. 국가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구체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으며, 주로 시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 계몽운동 성격의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당시의 국가 재정이나 교육 및 사회적 상황을 보면, 국가는 전후 재정 부족으로 복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해외 차관에 의존하였음. 국민들의 삶도 실업과 가난, 굶주림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음. 상당수의 국민들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여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국가의 문맹률이 대단

히 높은 실정이었음. 또한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학교교육의 시기를 놓치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들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노력들이 전개되었음. 즉,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관심있는 인사와 단체를 중심으로 야간학교, 재건학교 등 문맹퇴치 운동, 농어촌문고 운동 등과 같은 사회 계몽운동이 전개되었음.

나. 교육기회 확대 정책

- 앞에서 언급한 6.25 전쟁 이후의 국가적 수난 시대를 겪으면서도 전 국민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는 1953~1958년까지 초등교육 의무화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개 학년씩 의무교육을 확대해 감. 당시의 국가적 재정 상황과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향한 매우 의미있는 투자 사업이었음. 초등교육 의무화를 통해 문맹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이후 1970년 대 전개된 산업화 물결과 함께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음.
-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은 역설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와 황폐화의 시발점이 되었음. 즉, 산업화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몰려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결과적으로 농어촌의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교사들도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됨. 학생수 감소와 교사의 농어촌 학교 근무기피 경향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농어촌 학교교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국가 산업화의 물결은 국가의 재정 확대와 학교교육의 양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 이후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및 평준화 정책과 1974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거치면서 한국의 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됨.

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 농어촌 인구 감소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농어촌의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격차를 양극화시키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오게 됨. 당시의 국가 수준 교육 당국에서는 국가 교육체계의 발전과 반

비례하여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음. 대표적으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의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 사이의 교육력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음.

- 교육이론의 발전과 함께 도농간 교육격차 줄이기 위하여 공정성의 측면에서 교육배려 대상인 농어촌 학교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재정의 투입 논리가 정당성을 갖게 되었음.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공정성이라는 교육 과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것임. 이후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국가 수준의 정책들이 추진됨.
- 이들 사업은 농어촌의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하거나 교육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들이라 할 것임. 복식학급의 축소, 상치교사 해소 및 순회교사 배치, 교육활동비 지급,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특색있는 교유과정 개발 및 제공,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과서 무상공급, 중학생 대상 의무교육 우선 실시, 농어촌 고등학생들에 대한 대학입시 특례입학 제도 확대 등은 이러한 도시와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음.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였던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 실시
- 2005년부터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 2000년 이후 다목적 교실, 도서관 등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추진
- 농어촌 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 우선 배치
- 농어촌 학생 대상 특기적성교육비 우선 지원

- 특히, 농어촌 학교 대상이 아닌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전개된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어촌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를 통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교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 등은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음.

라.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강화 사업

- 국가 수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정주여건 열악화와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좋아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악화되었음. 계속해서 농어촌의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교의 교육력도 저하됨. 이에 당시의 교육정책 당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소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함. 또한 농어촌 문제를 국가의 전 부처적 노력을 통해 지원하려 하였음. 즉, 당시의 농림부와 교육부 등이 협력하여 2004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어촌 학교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음.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교육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은 수많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남. 즉, 1982년부터 추진되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분교장을 포함하여 약 5,000여개 이상의 학교들이 통폐합되었음. 비록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약화 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한 편으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이촌향도 현상에 기름을 붙는 역기능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즉, 한 지역에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 자본재로서의 학교가 갖는 기능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을 가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해져서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였음.
- 2000년에 들어서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둔화되었으며, 농어촌 학교에 대한 특단의 여러 정책적 배려가 의미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음. 즉, 국가수준 및 지역 수준의 교육정책 당국도 무작정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 대상 학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시의 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함. 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었음.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학교균형 지역중심학교 구축하기
 - 독립형 지역중심학교 구축하기
 - 특성화형 지역중심학교 구축하기 등

- 중학교의 교육력 강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학교균형 중학교
- 특성화형 중학교 모델
- 고등학교의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1군 1우수고 육성 사업(농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 농어촌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 확대
- 농어촌 우수고 사업 확대와 함께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함. 농어촌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해 지역을 떠나는 주민과 학생들을 머무를 수 있도록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학교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적극적 교육정책을 추진함. 농어촌의 자율학교들은 학교장 임용제를 초빙제 등으로 운영하여 학교의 리더십을 안정화 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교육력을 강화하려 하였음. 또한 학생선발의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입학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마.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시도교육청 중심의 농어촌 학교 지원사업

-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자치제의 강화에 따라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중심의 사업으로 정착하게 됨.
- 각 시도별로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작은학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 시도별 농어촌 학교 지원 활동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 이상과 같은 농어촌 교육정책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Ⅲ-1>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Ⅲ-1> 농어촌 교육정책 목표별 주요 사업 내용

정책 목표	시기	주요 프로그램
농어촌 (계몽) 운동	해방직후~ 70년대	- 문맹퇴치 운동 - 재건학교 운동 등
교육기회 확대 정책	50년대~ 90년대	-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완성 -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한 중등교육 기획 확대 - 읍면 지역 중학 의무교육 우선실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60년대~ 현재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정 - 학교급식 우선 실시 -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사업 - 영어 원어민 교사 우선 배치, 특기적성 교육비 우선 지원 - 통학열차 및 통학버스 지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학습보조원 배치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 전형 - 지역고교 출신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강화 사업	80년대~ 2010	- 적정규모 육성사업 - 학교군 사업 - 지역 거점학교 육성 사업 - 1군1우수고 육성 사업 - 돌봄학교, 전원학교 사업 - 기숙형학교 등
작은학교 지원 사업	2010~현재	- 교육청 중심의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 -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 확대 -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 단위학교 특색사업 -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 화상교실 구축 사업 등

3. 국가 수준 농어촌 교육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해방 이후 2010년경까지 농어촌의 교육 관련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당국인 교육부에서 주도하였음. 즉,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 흐름과 함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적 필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육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비록 농어촌의 교육적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교육부의 노력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며, 그 정책적 가치는 절대 간과될 수 없는 의미 있는 노력이었음.
- 물론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아쉬운 측면들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함.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농어촌 교육정책의 방향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농어촌 문제 상황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

- 앞 절의 시대적 구분에 의한 농어촌 교육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들은 시대적 필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해 왔다고 할 수 있음. 농어촌의 문맹률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중등학교 교육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민간 육영사업 희망자들이 사립 중등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음.
- 또한 학교가 소규모화 함에 따라 교육력을 잃고 무기력화되는 농어촌 학교들을 재활력화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
- 2000년대에는 시대적 문제의식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 농어촌의 문제상황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주요 정책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문맹률 제고를 위한 초등학교 의무교육화
 - 농어촌 지역의 중등학교 교육수요에 대응한 사립학교법 제정
 - 농어촌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 농어촌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군 및 우수교 지원 사업
 - 교육양극화 극복을 위한 돌봄학교, 전원학교 등 사업 등
- 이처럼 교육부에서 추진하였던 그동안의 농어촌 학교 및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대응성 차원에서 정책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됨.
-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그동안 노력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임. 교육정책으로 이러한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부의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들은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 한 노력이었으며, 그때 그때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한 매우 적절한 정책적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속성과 안정성의 한계를 보인 농어촌 교육정책

- 전반적으로 교육부 정책의 대응성은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성 혹은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음. 즉, 농어촌 교육지원과 같은 성격의 정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의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함.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들을 보면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지속성의 관점에서 한계를 보임.
- 그 이전의 농어촌 지원 정책들은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 예를 들어 1964년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교육양극화 극복을 위해 반드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음.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 동력이 미흡하여 각종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게 되었음. 물론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그러나 일부 의미 있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학교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식한 당시의 국회와 일부 연구자들은 농어촌 학교 및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 노력을 시도하였음²⁾.
-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었던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강화 사업이나 교육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3년의 한시성을 가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따라서, 3년의 특별교부금 지원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계속되었음. 이들 사업은 사업비가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사업의 종료와 함께 원상태로 회귀되어 버리고 마는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었음.
- 앞 절의 농어촌 학교 및 학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농어촌의 교육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국가

2) 2007년에 당시 최순형 의원 등이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08년에는 이윤석 의원 등이 다시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음. 동년 12월 16일에는 강기갑 의원 등이 또한 최순형 의원 등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을 재 발의하기도 하였음. 김영진 의원 등도 농산어촌교육복지특별법을 2009년에 발의하였으나 모두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의 정책 아젠다로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할 것임.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밀도 양극단 현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이런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농어촌 교육 지원의 문제는 순간적 변동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 지원해야 하는 대상일 것임. 따라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체제와 제도 구축은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 판단됨.

다. 경쟁 중심 사업 방향의 비합리성과 불법적 차별 발생 가능성

- 농어촌 학교교육 지원은 전체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일부 경쟁에 선정된 학교만을 위해서는 안됨. 즉, 경쟁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일부 농어촌 학교만 지원하는 접근 방향은 농어촌 교육 발전과 역행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접근 방법일 수 있음. 경쟁에 선정된 학교가 발전한다고 비선정 학교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님. 오히려 비선정 학교의 낙후와 공동화에 따라 전체 농어촌 지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농어촌 전체의 학교교육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다면, 마땅히 경쟁 위주의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또한 경쟁 위주의 사업 구조는 비선정 학교와 학생의 불법적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평준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한국의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은 타 학교와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특정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거나 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학생의 능력 밖의 부당한 차별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부당한 차별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위주의 선정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농어촌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반 지원 혹은 선택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요약하면,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 중심의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반 지원 방식 혹은 선택 중심 사업 체제로 변화되어야 함.

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학생 지원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임

-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농어촌 학교 및 학생 문제는 국가 수준

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고도화에 따라 학교 관련 사항의 교육감 권한이 강조되면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듯함.

- 앞 절의 통계 수치에서 본 것처럼,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가 562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약 1만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들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홀로 지원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음.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공동으로 지원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도시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학생들임. 이들은 도시의 대규모 학교 학생들에 비해 많은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불이익의 문제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이들의 교육적 차별 현상을 극복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 사항이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마. 농어촌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 강화 필요성

- 농어촌의 학교는 그들의 상대 학교인 도시의 학교들과는 매우 다른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어촌 학교가 도시 학교와 서로 다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주어야 함. 즉,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자유롭게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해 주어야 함. 이러한 자율권은 경쟁력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특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 사실, 농어촌 학교에 대한 최초의 접근 전략은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교육의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도시의 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학교들을 농어촌 지역에 만들자고 하는 정책적 의도와 목표는 나름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농어촌 학교교육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중요한 점은 농어촌 학교 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음. 즉, 그들의 상대 학교인 도시의 학교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학교와는 다른 다른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인가의 문제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담론과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

연 그대로의 상태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농어촌 학교의 차별화라 할 수 있음. 도시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자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발전하는 것임. 현재 농어촌 작은 학교 운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은 학교의 대부분은 이러한 농어촌 학교의 자연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에 이른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강화한 자연 친화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 극대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1.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개관

- 시·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정책 관련 자료를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였음. 농어촌 교육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농어촌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장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 수집된 자료를 보면 농어촌만을 지원하고자 수립된 계획은 없었고, 농어촌 학교를 포함하여 도시의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많은 교육청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 작은 학교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조직도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없고, 작은 학교 사업을 교육혁신과, 정책혁신과 등 부서의 한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
- 시와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과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Ⅳ-1, 2>와 같음.

<표Ⅳ-1>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지원 조례

교육청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지원 조례
서울	• 농촌유학 추진 계획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산	• 다문화 학급 대상 SW·AI교육 지원 사업 •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운영 계획 • 중학교 위캔두 계절학교 운영 계획 • 원도심·서부산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과 노는 학교도서관 사업계획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	학교텃밭 조성·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인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운영 계획	•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대전	대전형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광주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계획	• 작은 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관한 조례
울산	작은 학교 지원 종합 계획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세종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교육부 특교 사업 대행)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표Ⅳ-1>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및 지원 조례는 시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다름. 서울과 부산과 같이 농어촌 학교가 없거나 적은 경우는 농촌이 있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농촌유학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며, 대전, 광주, 울산과 같이 농촌이 있는 광역시는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과 인천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농촌교육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은 도시의 다문화 학생,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구는 텃밭가꾸기 사업을 통해 농촌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음. 대전, 광주, 울산은 작은 학교 지원 조례와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세종은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은 없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을 소개하고 있으나 세종교육청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관장하고 있을뿐이지 세종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

<표Ⅳ-2>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지원 조례

교육청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지원 조례
경기	•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평가 및 질관리 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 유학 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충북	•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 계획	•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 전남형 작은 학교 운영 기본 계획 •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 계획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섬지역 교육진흥 조례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북	• 초·중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계획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경남 작은 학교 지원 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 교육균형발전 추진 계획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표Ⅳ-2>에서 보듯이 많은 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이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주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 추진 조례를 통해 농촌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제주교육청의 경우 농촌교육을 지원하는 계획은 제주 전체의 발전 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높다 할 수 있음.
- 그 외의 교육청의 농촌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경기도는 통합운영학교 관리, 강원도는 농촌 유학 계획, 경북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해 농촌교육을 지원하

고 있음.

- 시와 도의 농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사업계획은 공통적으로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교육청에 따라 다른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으로 여겨짐.

2.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

가. 서울

1) 정책

- 서울특별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농촌유학 추진 계획

2) 사업목적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농촌에 유학함으로써 생태 문명을 경험하고, 생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3) 사업내용

- 2020년 12월 2일에 2021년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2월 7일에 전라남도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운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1년 1학기에는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60명 이하의 정규 소규모 학교에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중학교 1~2학년 재학생 100명 내외를 선발하여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가족체류형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농촌 소규모 학교에 유학하도록 하였음. 홈스테이형은 농가 부모의 동거인으로, 지역센터형은 활동가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가족체류형은 학생과 보호자 1인 이상이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하여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음. 2021년 2학기에는 50명 내외를 선발하였음.
- 2022년 1학기는 전년도 사업과 같이 10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농촌유학을 시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전년 50명보다 2배 많은 100명을 선발하여 유학을 하도록 하였음.
- 2023년 1학기에는 전라북도를 추가하였고 전북의 유학생은 1년을 체류하도록 하였으며 50명을 선발하고, 전남의 학생수도 150명으로 확대하였음. 2학기에는 전

남 학생수를 50~100명으로 축소하고, 강원도에 50명을 배정하여 유학하도록 하였음.

4) 예산

- 2021년 1학기에는 유학비에 소요되는 월 80만원 중, 서울시교육청에서 월 10만원, 전남교육청에서 월 30만원, 학부모가 월 40만원을 부담하였음. 가족체류형은 월 40만원을 제외한 농가 임대료를 학부모가 부담하였음. 2021년 2학기에는 가족체류형인 경우 서울교육청에서 학생 1인 30만원, 2인 40만원, 3인 5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남교육청에서는 학생당 30만원을 지원하였음.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은 서울교육청에서 학생당 30만원, 전남교육청에서 3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부모는 20만원을 매월 부담하였음. 2022, 2023년의 예산 지원 방법은 2021년 2학기과 유사하였음. 2023년 1학기에 전북이 추가됨으로써 전북의 예산지원 규모도 전남과 동일하였음. 2023년 2학기의 강원도는 학생 1인 월 60만원, 2인 월 80만원, 3인 월 100만원을 지원하였음.

5) 성과

- 농촌 유학을 통해 학교 안 배움 활동과 학교 밖 마을 체험을 통해 앎, 삶, 함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하고, 도시와 차별화된 농촌의 생태 환경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를 기대하였음.
- 2021년 1학기에 추진하였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2021년 2학기에는 50명 내외, 2022년 1학기에 100명 내외, 2022년 2학기에 100명 내외, 2023년 1학기에 200명 내외로 확대되었으며, 전북교육청이 추가되었음. 2023년 2학기에는 강원도도 추가되었음.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을 추진하면서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청이 전남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강원교육청으로 확대되고, 학생수도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도시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농촌의 소규모 학교도 학생을 증원하고, 도시의 학생과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음.

나. 부산

a.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1

1) 정책

- 다문화 학급 대상 SW·AI 교육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다문화 학생들 대상 SW·AI 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 강화
-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
- 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 SW·AI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

3) 사업내용

- 2023.1.3.-2023.2.1. 기간에 남향 초 외 9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학급 학생 114명이 참가하여 부산교육대학교 임화경 교수 외 12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이해하기, 바다 속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기, 햄스터 로봇으로 미로 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1차로 진행함. 2023.7.25.-9.22일까지는 서감초 외 10교의 다문화 학생 총 109명이 참가하여 부산교육대학교 임화경 교수 외 6명의 교사가 참여 인공지능 이해하기,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기, AI 로봇으로 스마트한 교실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음.

4) 성과

-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SW·AI 교육을 시행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농어촌 교육과는 연관이 적음.

b.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2

1) 정책

- - 큰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운영 계획

2) 사업목적

- 정관 신도시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운영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 교육 불균형 해소
- 자유통학구역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 2022학년도 통학구역 지정 시부터 시행
-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 기회 부여
-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일방향 통학구역 지정 운영

- 증축 없이 보유 교실 수용 범위 내 운영 가능한 최대 학습수 및 학생수를 설정하여 추진
- 자가 통학이 원칙이나 기존 통학차량 내 유휴 좌석이 존재할 경우 운행 시간 및 거리를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운행 여부 결정
- 큰 학교 선정 대상: 급당 학생 배치 기준 초과 학교, 학생수가 인근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신설학교, 학교의 의견을 고려하여 통학구역 지정이 필요한 학교
- 작은 학교 선정 대상: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증축 없이 유입 학생 배치 가능 학교, 큰 학교의 인접 지역으로 학생 유입이 가능한 농어촌 학교
- 2022년도에 정관신도시 개발 지역의 과밀·과대학교 6개교, 작은 학교 4개교 선정
- 추진 상의 문제점: 작은 학교의 면학분위기 저해, 일방향 전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차량탑승, 돌봄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의 업무 과중, 부적응 학생 전학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작은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반대가 높음
- 개선 방안: 1안: 신입생에 한해 제도 적용, 2안: 작은 학교별 학생 희망 정원 설정
- 2022년도에 월평초 17명, 철마초 8명, 장안초 14명, 좌천초 11명 자유통학구역 학교 추진
- 2023년도 작은 학교 자유 통학 구역 확대 운영. 2022년 시행 결과 학생 94%, 학부모 95%, 교직원 95%가 만족을 보임에 따라 일광신도시로 확대 시행. 일광 신도시의 일광초, 해빛초 학생을 농어촌 학교인 칠암초, 죽성초로 전입하도록 함. 이에 따라 죽성초 13명, 칠암초 8명 전입 희망.

4) 성과

- 정관과 일광의 신도시 개발로 과밀화된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의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을 하는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운영 사업은 도시의 과밀과 농촌의 과소를 해소하는 정책이나 실제 성과면에서 보면 정관 신도시에서 30명, 일광 신도시에서 21명이 전입하고자 희망하였음. 정책에 비해 과밀과 과소를 해소하는 정책으로는 성과가 크지 않음

c.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3

1) 정책

- 위캔두 계절학기

2) 사업목적

-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활동을 통한 학력 신장 지원

- 교육격차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 지원 확대

3) 사업내용

- 겨울방학을 활용한 중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과 학습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서부산권 내 인근 학교 간 지역연합 프로그램 구성
- 3주간 총 90차시(교과 84차시, 특강 6차시). 1일 6차시 운영
- 국어, 수학, 영어의 교과별 주제 심화 보충 수업 및 주제 특강

4) 예산

- 운영 학교별 168,540,000원 지원

5) 성과

- 지역 여건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지원
- 학생 개인별 맞춤형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통한 학력 향상
- 서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 지지만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의 상관은 높지 않음.

d.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4

1) 정책

- 원도심·서부산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과 노는 학교 도서관」 사업계획

2) 사업목적

-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원도심·서부산권 학생의 교육 및 독서 환경 개선 필요
- 학교 도서관을 휴식과 놀이를 함께 즐기며 꿈과 생각을 키워가는 창의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으로 변화 도모

3) 사업내용

- 원도심·서부산권 소재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원도심(서구·동구·중구·영도구), 서부산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각 구별 초등학교 1교(총 8교)

4) 예산

- 학교별로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 지원 총 8억원

5) 성과

- 지역의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도서관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여겨짐
- 그렇지만 같은 지역인 경우에도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됨
-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교육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e. 부산교육청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의 시사점

- 부산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으로 다문화 학급대상 찾아가는 SW·AI 교육 지원, 작은 학교 자유 통학구역 운영, 위캔두 계절학교, 책과 노는 학교 도서관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외 학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움. 부산이 갖는 대도시의 특성 때문에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다. 대구

a.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1

1) 정책

- 학교 텃밭 조성·운영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학교 텃밭 조성을 통해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대구시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 텃밭 조성

4) 예산

- 학교별로 시청이 3천만원 지원하고 학교에서 300만원 부담

- 2020년 41교(유치원 7, 초등 22, 중학교 7, 고등학교 5), 2021년 44교(유치원 7, 초등 24, 중학교 9, 고등학교 3, 특수 1), 2022년 50교(유치원 19, 초등 16, 중학교 9, 고등학교 6) 선정하여 지원 2023년도 25교 지원

5) 성과

- 도시에서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

b.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2

1) 정책

-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로컬푸드매장 조성 지원

2) 사업목적

- 우수농가와 재학생의 매칭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농산업분야 전문성 향상
-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연계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
- 영농마이스터지원센터 활용, 안전하고 신선하며 저렴한 지역농산물 확대 공급

3) 사업내용

- 영농마이스터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및 우수 농사와 학생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장 활용

4) 예산

- 대구광역시 지원예산 4,000만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추가 교육비와 운영비는 시, 교육청, 학교가 나누어 분담.

5) 성과

- 대구시, 교육청, 학교가 협업하는 교육방식과 모델 제시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실습을 통해 경험
- 영농 창업 실무 능력 강화

c. 대구교육청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의 시사점

- 대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

제가 있음. 그러기 때문에 농촌을 체험하고, 농업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구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작은 학교, 달성군, 군위군에 있는 농어촌 학교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라. 인천

1) 정책

-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운영

2) 사업목적

- 도시의 학생들에게 도시 학교,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촌의 생태 친화적 교육 활동을 제공
- 학생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친구, 이웃, 마을과의 만남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상호 협력하는 교육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생태 친화적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태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생태 시민 육성

3) 사업내용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2년 TF팀 구축 및 협의, 2023년 연구위탁용역 발주, 선진지역탐방, 조례제정
- 2024년 교육지원청, 군청과 연계한 농가주택, 마을활동가, 참여학교 모집 및 발굴
- 농촌체험프로그램 시범 운영
- 2025년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4) 예산

- 정책용역비 및 운영비 4,500만원

5) 성과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중임. 인천광역시가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 교육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마. 대전

1) 정책

- 대전형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2) 사업목적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도심공동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학교 간·지역간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
- 작은 학교 강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미래 교육 준비
- 학생·학부모·지역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3) 사업내용

- 농촌형 작은 학교(초등학교) 모델 개발 운영
 - 대전형 작은 학교 모델학교 선정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 인성·정서·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운영
 - 창의융합, 과학교육, SW·AI 등 디지털 교육, 환경 생태 교육
 - 인근 초·중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활동 등
 - 대전형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적용
- 공·사립 중학교 활성화
 - (공립중) 작은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 (원도심 사립중) 교육과정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원(특성화중학교 전환시 학생 선발권 부여)
 - (공통)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작은 학교 공간 혁신사업 연계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강화
 - 작은 학교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 작은 학교 홍보 및 지원
 - 대전형 작은 학교 모델학교 운영성과 평가
 - 작은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 워크숍
 - 작은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 성과

- 작은 학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적용으로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유입되어 적

정규모 학교 육성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운영으로 학부모·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 적정 예산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학교간·지역간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
- 대전교육청에도 농촌지역이 있지만 농촌지역만 한정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인 작은 학교를 지정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바. 광주

1) 정책

-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계획

2) 사업목적

- 특색 있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오고 싶고, 보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작은 학교 구현
-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 타 지역 이주 방지 및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 유도
- 지역 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 운영 및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작은 학교 구현

3) 사업내용

- 작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광주광역시에서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와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학교
- 대상: 농촌 소규모 학교 14교, 도심소규모 학교 11교
- 작은 학교 강점을 살리는 교육활동 지원
 - 작은 학교 특색교육활동 지원
 - 도심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 농촌 소규모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배움과 돌봄이 함께 하는 교육여건 조성
 - 농촌 소규모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 행정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강화

- 교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문화 조성
 -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 운영
 - 마을과 함께하는 「광주마을교육공동체」 추진
 - 광주광역시 농촌교육발전협의회 운영

4) 예산

- 아래 제시한 예산은 2021년 예산인데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음. 여기에서는 예산분석이 목적이 아니고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2021년 예산만 예시로 제시함.
- 작은 학교 강점을 살리는 교육활동 지원
 - 작은 학교 특색교육활동 지원 9,600만원
 - 도심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1억 3,000만원
 - 농촌 소규모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3,920만원
- 배움과 돌봄이 함께 하는 교육여건 조성
 - 농촌 소규모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1억 2,000만원
 -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70억 700만원
 - 행정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강화(통학버스 운영) 12억 5,400만원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 운영
 - 마을과 함께하는 「광주마을교육공동체」 추진 6,000만원
 - 광주광역시 농촌교육발전협의회 운영 564만원

5) 성과

-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학교교육력 제고
-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작은 학교 구현
-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작은 학교 운영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작은 학교에 기여
-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기술함

사. 울산

1) 정책

- 작은 학교 지원 종합 계획

2) 사업목적

-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작은 학교 실현
-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와 마을의 교육력 중심의 상생과 지속 가능성 확보

3) 사업내용

- 작은 학교: 구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 군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인 학교
- 작은 학교 지원 기반 조성
 - 작은 학교 지원 인프라 구축
 - 작은 학교 자율 경영 체제 강화
-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 강화
 -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 지역별·유형별 맞춤 지원(강남, 강북교육지원청)
- 작은 학교 나눔과 성장
 - 성장 실천 사례 나눔
 - 지원 사업 유공 표창

4) 성과

- 작은 학교 지원체제 구축: 조례 제정 및 시교육청 부서별,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작은 학교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통한 지원 인적 인프라 구축
-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 강화
- 작은 학교 나눔과 성장을 진행
- 농촌과 도시의 작은 학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음.

아. 세종

1) 정책

-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문화예술교육 지원 변경 계획

2) 사업목적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전문기관-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체제 마련

-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선정으로 농어촌 학교(읍·면 지역)의 문화적 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의 문화적 동반 성장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2년 시범 운영한 사업을 2023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교육부가 추진하고 세종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되어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임.
- 9개 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이 참여: 경기-가평/ 강원-춘천, 원주/ 충북-음성/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남원, 전남-해남/ 경북-봉화/ 경남-고성

4) 예산

- 특별교부금 14억 8,400만원

5) 성과

- 농어촌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은 관리만 할 뿐 세종시 여건에 맞는 농촌교육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 세종시 교육청의 농촌학교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

가. 경기

1) 정책

-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평가 및 질 관리 계획

2) 사업목적

- 연구학교 운영 평가와 질 관리를 통한 연구학교 성과 내실화 및 책무성 제고
- 연구학교 운영·성과 일반화로 경기 미래 교육 발전동력 확보 및 행복한 학교 교육 구현

3) 사업내용

- 통합운영학교는 농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초중통합학교, 중고통합학교, 초중고통합학교의 유형이 있음.
-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학교의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연구학교의 운영이 잘 되도록 평가하고 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 사업 내용으로 첫째, 연구학교 현장자문지원단을 운영하여 내부 자문위원이 연 4회의 자문 및 평가, 외부 자문위원이 연 2회 방문 평가 및 자문을 하도록 함. 연구학교는 향산초중, 둔남초중, 대관초중 3교임

4) 성과

- 연구학교의 질적 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로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연구학교의 과정중심 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연구학교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함.
-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농촌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학교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 교육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업 계획임.
- 경기도의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강원

a.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1

1) 정책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 유학 계획

2) 사업목적

- 농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구 유입
- 도시지역 학교와 강원지역 농촌학교 연계를 통한 학생 수 감소 완화
- 농촌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사회·문화·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

3) 사업내용

- 2023. 9. 1~2024. 2. 28(6개월) 기간에 초등학교 1-5학년 대상 가족체류형, 농가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서울의 초등학생을 강원도의 소규모 학교에 전입하게 하여 농촌 생활을 체험하게 하였음
- 가족체류형은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지자체 · 마을에서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유학이고, 농가홈스테이형은 학생이 학교 인근 농가에서 농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유학임. 유학센터형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유학임. 2023년 하반기에 가족체류형 26명(영월 18명, 홍천 7명, 인제 1명), 농가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7명(춘천 7명)이 신청하여 농촌 유학을 하였음.

4) 예산

- 가족체류형은 1명 60만원, 2명 80만원, 3명 100만원, 4명 120만원을 6개월 지원하였고 농가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은 학생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였음.

5) 성과

- 2023년에 처음 실시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학생 33명이 유학하였음. 유학을 받은 영월의 녹전초(8명), 옥동초(10명), 춘천의 송화초(7명)를 제외하고는 4명 이하의 학생이 농촌 유학에 참여하였음.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수 유입이라는 목표하고는 거리가 있는 농촌 유학생수임.
- 강원도의 경우 산이 많아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강원도의 농산어촌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더 필요함.

b.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2

1) 정책

-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2) 사업목적

- 작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강화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3) 사업내용

-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모델학교 운영
- 작은 학교·학급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급 단위 특색 프로젝트 운영 지원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협력적 작은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4) 예산

-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 2023년 예산 240교 1,808,116 천원
 - 2024년 예산 260교 1,981,980 천원

c.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3

1) 정책

- 작은 학교 통학 여건 개선

2) 사업목적

- 도-농간 공동 학구 및 학구 광역화를 추진한 작은 학교로의 통학 지원 내실화

3) 사업내용

- 작은 학교 통학 차량 임차비 지원
 - 도-농간 공동 통학구역 및 학구 광역화에 따른 작은 학교 임차 통학 차량 지원 (15청, 39교, 40대)

4) 예산

- 작은 학교 임차 통학 차량 지원
 - 2023년 37대 2,142, 495 천원
 - 2024년 40대 2,335, 245 천원

d.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4

1) 정책

-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운영

2) 사업목적

-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및 자기 주도성, 창의적 사고력, 분석 능력 등 심화 역량을 포괄하는 특화된 학력 중점 농어촌 학교 육성
-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지성, 협력적 소통의 인성을 겸비한 강원 인재 육성
- 기숙사 활용 학교 운영의 자율권 강화로 창의적 교육시스템 구축
- 강원형 농어촌 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 학력 향상을 위한 단위 학교의 학습지도 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
-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 방안 사례 개발 및 모델 제시

3) 사업내용

- 도내 기숙사 운영 일반고 중 1교(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정
 -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및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
 -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강화
 - 다양한 방과후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촘촘한 학습 기회 제공
 - 방과후, 주말, 방학 등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운영으로 배움과 익힘 조화
 - 학습결손 보충, 존중감 향상, 학습 및 진로지도 등 필요 내용 제공
 - 학력과 진로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4) 예산

-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운영
 - 운영비 80,000 천원

e.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5

1) 정책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 사업목적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한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3) 사업내용

- 농산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4) 예산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2023년 17 교육지원청 1,681,130 천원
 - 2024년 17 교육지원청 1,681,130 천원

f.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6

1) 정책

-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2) 사업목적

-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지자체-학교 협력 방안 모색
- 농어촌 유학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추진 방향 모색
- 농어촌 유학 추진정책에 대한 교육 주체의 소통·공감의 장 마련
- 농어촌 학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구 유입
- 도시지역 학교와 강원지역 농어촌 학교 연계를 통한 학생 수 감소 완화
- 농어촌 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사회·문화·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

3) 사업내용

- 농어촌 유학 설명회 개최
-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농어촌 유학 네트워크 구축
- 가족체류형, 농가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농어촌 유학 운영

4) 예산

- 농어촌 유학 설명회 개최 2024년 예산 13,240 천원
- 농어촌 유학 정책위원회 운영 2024년 예산 10,100 천원
- 농어촌 유학 주거비(체류비) 지원
 - 2023년 50명 180,000 천원
 - 2024년 150명 540,000 천원
- 교육과정 운영비
 - 2024년 20교 400,000 천원

다. 충북

a.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1

1) 정책

-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2) 사업목적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 작은 학교로 학생유입을 통한 적정규모 학생수 유지로 교육과정 정상화 도모
-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림 교육과정 특색화

3)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음. 사업의 내용을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대상 학교나 예산 등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체적인 경향을 2021년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적정규모 학생수 유지 방안(학생 유입 방안)
 - 적정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서의 학교
 - 작은 학교 공동(일방) 학구제 운영: 2020년 4월 1일 기준 35교 237명 유입, 2021년 39교 운영
 - 학생 통학 지원: 2021년 222교 통학버스 274대, 통학택시 74대, 교통비 45명 12,472,469천원 지원
-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
 -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 문화예술, 학교체육, 진로교육, 독서·인문소양교육, 기타 5개의 사업 중에서 선택 지원
 - 행복교육지구: 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사업

4) 예산

- 학생 통학 지원: 2021년 222교 통학버스 274대, 통학택시 74대, 교통비 45명

12,472,469천원 지원

5) 성과

-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생수 유지 방안과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농산촌의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지만 농산촌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b.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2

1) 정책

- 제1차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2) 사업목적

- 추진 배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작은 학교 급증,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육여건 악화, 학생 유입 대책, 유휴교실 활용 방안 요구
- 아이의 힘이 자라는 작은 학교 교육생태계 조성
- 추진 일정: 2023년 8월 제1차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2023년 8월-12월 제2차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3) 사업내용

- 자생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분교장 개편 기준 하향 조정: 학생수 20명 이하에서 12명 이하로 개선
 - 작은 학교 특색사업 지원 확대: 상대평가 선정에서 절대평가 선정으로 지원 확대
 - 공동일반학구 확대(통학지원 포함): 인접 지역에서 희망지역으로 확대
 -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꿈 품은 공감교실 사업의 25%를 작은 학교에 배정
- 충북형 특색있는 작은 학교 모델 개발
 -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 다양한 작은 학교 모델 개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캠퍼스형학교(초등학교 1-4학년들이 지역의 아동센터, 주민문화공간, 지역커뮤니티센터, 주민복지공간을 활용하는 학교) 운영, 지역별 작은 학교 모델 선정(충주 스포츠 중심, 제천 한방 건강 중심, 보은 역사중심-동학, 옥천 생태 중심-묘목, 영동 국악중심), 도심

- 형 학교(일과중 학생중심, 일과후 지역주민 활용) 개발 운영
- 촘촘한 행·재정적 지원
 - 교직원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지원 및 집행방식 개선(학습준비물, 차량임차,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 학교간 공동 구매)
 - 관사 개선 및 확충

4) 성과

-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대하여 작은 학교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에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와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종합계획은 인프라, 모델개발, 행·재정적 지원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농촌의 많은 학교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농산촌이 많은 충북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충북의 농산어촌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라. 충남

1) 정책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2) 사업목적

-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
-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과 함께 지속 성장 발전하는 미래학교로서의 농어촌 작은 학교 활성화

3) 사업내용

- 작은 학교 교육여건 조성
 - 법과 제도 개선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작은 학교 교직원 인사 우대 정책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고등학교 입학 시 특별전형
 - 작은 학교 맞춤형 공간 개선

-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감성꿈틀 공간 조성,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소규모 체육과 증축)
- 지역과 연계한 복합시설 구축 지원(그린 스마트 공간 조성, 마을형 도서관, 미래형 복합시설, 행복 공간 조성)
- 통학 여건 개선
 - 학생 통학 차량 지원
 - 농어촌 학생 통학 환경 개선(통학비 자체 부담률 완화 및 방과후학교 참여 후 귀가 차량비 지원)
- 작은 학교 업무 경감 지원
 - 작은 학교 교무업무지원팀 운영 내실화
 - 학교지원센터 작은 학교 지원사업 강화
- 작은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활성화
 - 작은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확산
 -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맞춤형 개별화 수업 강화
 -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여건 조성
 -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작은 학교 맞춤형 연수 지원
 - 지속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 자체 특색을 살린 운영 유형 지원(학교특색형)
 - 학교 간 연계·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학교 간 협력형)
- 협력체제 구축 지원
 - 학교-마을 연계 활동 지원
 - 학교와 마을 연계 사업 지원
 -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
 - 작은 학교 지원단 운영
 - 작은 학교 정책(실무)지원단 구성
 - 작은 학교 정책(실무) 지원단 역할
 -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
 - 충남교육행복지구와 연계한 협력체제 강화
 - 학교-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강화
 - 충남형 농촌지역 재생사업 기관연계 추진

- 도 교육청 부서 간 협력체제 구축
- 부서별 작은 학교 지원 정책 마련
- 부서 간 작은 학교 정책 공유

4) 예산

○ 작은 학교 지원 예산

<표Ⅳ-3> 2021~2023년 작은 학교 지원 예산 총액

(단위: 천원)

연도	2021	2022	2023
예산금액	1,332,651	1,593,316	4,742,426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2021-2023년 작은 학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요약, 충청남도 교육청 내부자료.

- 작은 학교 지원예산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과 교육청의 관리 예산이 포함됨.
 - 연도별 작은 학교 지원 예산 총액 중 80% 이상이 학교별 사업 지원에 해당
 - 작은 학교 증가에 따라 순차적인 본예산 증액 및 소외지역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교금 지원
 - 2023년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부 특교금 31억 3천 8백만원 지원
- 2021~2023년 학교별 지원 사업 현황

<표Ⅳ-4> 2021-2023년 연도별 지원 학교수 및 지원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초	148교	156교	165교
중	36교	44교	42교
합계	184교	200교	207교
지원금	1,108,110	1,294,875	1,347,746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2021-2023년 작은 학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요약, 충청남도

교육청 내부자료.

- 학교별 지원 사업은 작은 학교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작은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학교별 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 단점을 보완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짐

5) 성과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계획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농어촌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예산 지원과 실행과정도 실질적임

마. 전북

1) 정책

-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2)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 교육여건 개선으로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3) 사업내용

-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에 기초하여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운영
 - 농어촌 학교 순회교사 지원
 - 농어촌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
 - 농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65교 9,808명
 - 농어촌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연계학교 운영
- 농어촌 학교 교육력 제고
 - 전북농촌유학 시범운영: 서울지역 초등학생 27명(가족체류형 17명, 홈스테이형

4명, 유학센터형 6명)

-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운영: 초 115교, 중 19교, 고 5교 총 139교 지정
- 농어촌 찾아가는 중3 진로상담
- 농어촌 고등학교 찾아가는 진학 상담 지원(2023년 신규)
- 창의·예술 미래공간 조성
-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교육협력 기반 강화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 학교와 지역 사회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4) 성과

-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함.
- 어울림학교의 의미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어울림학교의 작은 학교 협력형, 초·중등학교 연계형, 학교-마을 협력형은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고, 공동통학구형은 학생들의 전입을 기초로 통학비를 지원하는 행정적인 내용임. 개념이 혼재해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바. 전남

a.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1

1) 정책

- 전남형 작은 학교 운영 기본 계획

2) 사업목적

-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한 가고 싶고 찾아오는 작은 학교 조성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 실현
- 작은 학교의 강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삶을 기획하는 행복한 작은 학교 실현

3) 사업내용

-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조례와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진흥 조례에 기초하여 전남형 작은 학교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조성,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 협력 체제 구축의 3영역으로 되어 있음.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여건 개선
 - 섬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운영 지원
 - 특색프로그램 운영 차량 지원
 -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역량 강화
 - 작은 학교 교육자료 개발 보급
 -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 섬지역 학교 근무 인식 개선을 위한 입직기 직무연수
 - 교육력 강화 공감대 확산
 - 참 좋은 전남형 작은 학교 선정
 - 전남형 작은 학교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 전남형 작은 학교 홍보 강화
-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작은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 섬지역 특색프로그램 운영
- 교육 협력 체제 구축
 - 지역사회 연계 협력
 - 지역사회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 운영 학교 지원 협의체 구성
 -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지원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성과

- 농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작은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작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지역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됨.

b.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 2

1) 정책

-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 계획

2) 사업목적

- 향후 30년 이내 지방소멸 가능성이 높은 전남지역 시·군 지자체에 학령인구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작은 학교를 지키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전남농산어촌유학은 전남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 환경 교육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일을 의미함
- 유학의 유형은 가족체류형과 홈스테이형이 있음. 가족체류형은 학생 및 가족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유형이고, 농가형은 학생이 당해 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생활하는 유형임. 가족체류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농가형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유학이 가능함.
- 비용은 가족체류형일 경우 전남교육청에서 가구당 월 30만원, 홈스테이인 경우 학생 1인당 30만을 지원함
- 전남교육청의 경우 농촌유학을 3년동안 시행하면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정주형 장기유학을 시행하고 있음. 정주형 장기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면단위 작은 학교 살리기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학임.

4) 성과

- 장기 유학의 경우 2022년에 해남군 북일면 2개교(북일초, 두륜중에 23가구 42명), 2023년에 해남군 계곡면·현산면 3개교(계곡초, 해남제일중, 현산초에 9가구 16명)에 장기 유학을 하였음
- 전남의 작은 학교, 소멸되는 학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도시의 학생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 경북

1) 정책

- 초·중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계획

2) 사업목적

- 작은 학교에 학생 유입의 기틀을 마련하여, 학생 수 증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 담당
-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에 교육만족도 제고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통폐합학교의 재통합 방지 노력
- 신도심 지역 과대·과밀 학급 해소 및 원도심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3) 사업내용

- 2019년부터 시행하여 2019년에는 29교를 시범 운영
- 2020년에는 초등학교 97교, 중학교 11교 총 108교 시범 운영
- 2021년에는 초등학교 123교, 중학교 20교 총 143교 운영
- 2022년에는 초등학교 137교 중학교 21교 총 158교 운영
- 2023년 초등학교 144교, 중학교 20교 총 164교 운영

4) 예산

- 2019년 초등학교 5억 8,000만원 지원
- 2020년도 108교 11억 9,000만원 지원
- 2021년도 143교 15억 1,500만원 지원
- 2022년도 158교 21억 5,000만원 지원
- 지원 기준은 학교별 자유학구제 시행 이후 재학생 유입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5명 이상 9명 이하는 1,500만원부터 31명 이상 4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표IV-5> 경북교육청 2023년 자유학구제 학교의 예산 지원

유입 학생 수	5명 ~ 9명	10명 ~ 20명	21명 ~ 30명	31명 이상
예산 지원	1천 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 성과

- 작은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의 과밀학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유학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9년부터 매년 해당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유학구제는 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과밀 과대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임.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아. 경남.

1) 정책

- 경남 작은 학교 지원 계획

2) 사업목적

-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작은 학교 실현
- 작은 학교 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 작은 학교 중심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계기 마련

3) 사업내용

-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여 「제 빛깔로 빛나는 작은 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임.
- 사업은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작은 학교 특색교육 지원, 작은 학교 협력과 성장의 3영역으로 구성됨.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 작은 학교 지원체제 구축
 -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작은 학교 교원 지원단 운영
 - 도교육청-경상남도 상시 협업체제 강화
 - 작은 학교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작은 학교 지역별 맞춤 지원 강화
 - 작은 학교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작은 학교(초등) 광역 통학구역 확대

- 작은 학교(중학교) 광역학구제 확대
- 작은 학교 자율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확대
- 작은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 지원
- 작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지원
 - 작은 학교 교실 재구조화 사업 운영
 - 경남 미래형 작은 학교 모델 개발
- 작은 학교 특색교육 지원
 - 교육지원청 작은 학교 지원 확대 및 강화
 - 교육지원청 작은 학교 활성화 운영비 지원 확대
 - 시 지역 작은 학교 지원 방안 마련
 - 작은 학교 특색·공동 교육과정 지원
 - 작은 학교 「교육과정 제 빛깔 찾기 워크숍」 지원
 -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
 - 작은 학교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육청-지자체-LH)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 2023년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 작은 학교 협력과 성장
 - 작은 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작은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 작은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행복교육지구와 연계 운영 강화
 -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작은 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작은 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워크숍
 - 작은 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 작은 학교 정책 연구 실시
 - 작은 학교 나눔 및 홍보 강화
 - 작은 학교 성장 이야기 포럼 개최
 - 작은 학교 지원 사업 유공 표창
 - 작은 학교 홍보 동영상 제작

4) 성과

-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작은 학교 조성

- 농어촌교육을 포함한 작은 학교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 제주

1)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균형발전 추진 계획

2) 사업목적

-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제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3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7개의 추진과제와 1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의 구조는 [그림Ⅳ-2]와 같음. [그림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여건을 고려한 교육환경 최적화,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의 3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교육여건 취약지역 교육지원 강화, 육취약계층을 위한 책임교육 강화임.
- 여건을 고려한 교육환경 최적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교육환경 개선 강화, 학생배치여건 개선임
-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맞춤형 교육 내실화,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교육 지원, 교육자치 및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지원 강화임
- 이들 추진과제별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별로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공동체 구현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1. 교육의 공공성 강화	1-1. 교육여건 취약지역 교육 지원 강화	- 교육여건 취약지역학교 운영 지원 - 교원 근무여건 개선 - 통학버스 운영 지원
	1-2.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책임 교육 강화	-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2. 여건을 고려한 교육환경 최적화	2-1. 교육환경 개선 강화	공공놀이터 설립 추진
	2-2. 학생 배치 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3.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3-1. 맞춤형 교육 내실화	- 기초학력 향상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3-2.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교육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강화 - 방과후학교 지원
	3-3. 교육자치 및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지원 강화	-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림 IV-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계획의 기본 구조

<표 IV-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세부과제별 2021년 추진 계획

세부과제	2021년 추진사업명
1-1-1. 교육여건 취약지역학교 운영 지원	건강생태학교 운영 지원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작은 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도서학교 운영비 지원
	원도심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추가 지원
	섬지역 소규모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소규모·원거리학교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1-1-2. 교원 근무여건 개선	방학 중 문화교실 운영
	교무행정지원 행정실무원 배치
	교장공모제 확대
	농어촌 순회교사제 운영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인사 우대
	마을학교선생님 제도 운영

세부과제	2021년 추진사업명
1-1-3. 통학버스 운영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1-2-1.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흔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교육급여 지원
	아우름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저녁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1-2-2.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1-2-3.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2-1-1. 공공놀이터(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공공놀이터(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2-2-1.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읍면지역 초·중·고 학생 배치 여건 개선
	원도심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원도심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3-1-1.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정·운영
	맞춤형 학습코칭 프로젝트 운영
	소규모학교 순회 상담 지원
3-1-2.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글로벌 화상교육 운영
	체험영어캠프 운영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메이커교실 운영
	STEAM 선도학교 운영
	예술학과 운영 지원
3-2-1.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강화	초등 돌봄교실 운영
3-2-2.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3-1.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제주형 자율학교(다흔디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3-3-2.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표Ⅳ-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세부과제별 2022년 추진 계획

세부과제	2022년 추진사업명
1-1-1. 교육여건 취약지역학교 운영 지원	건강생태학교 운영 지원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세부과제	2022년 추진사업명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작은 학교 학교운영정상경비 추가 지원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정상경비 추가 지원
	도서학교 운영비 지원
	원도심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추가 지원
	섬지역 소규모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소규모·원거리학교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읍면지역 학교지원 문화·예술 교실
1-1-2.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무행정지원 행정실무원 배치
	교장공모제 확대
	농어촌 순회교사제 운영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인사 우대
	마을학교선생님 제도 운영
1-1-3. 통학버스 운영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1-2-1.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교육급여 지원
	아우름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저녁급식비 지원
1-2-2.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1-2-3.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
2-1-1. 공공놀이터(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기적의 놀이터 조성 및 운영
2-2-1.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읍면지역 초·중·고 학생 배치 여건 개선
	원도심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원도심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3-1-1.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력향상 자율학교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학습 지원
	학습부진학생 개입 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 상담 지원
3-1-2.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체험영어캠프 운영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메이커교실 운영
	STEAM 선도학교 운영

세부과제	2022년 추진사업명
	농어촌 일반고 예술학과 운영 지원
3-2-1.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강화	초등 돌봄교실 운영
3-2-2.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3-1.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제주형 자율학교(다흔디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3-3-2.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표Ⅳ-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세부과제별 2023년 추진 계획

세부과제	2023년 추진사업명
1-1-1. 교육여건 취약지역학교 운영 지원	건강생태학교 운영 지원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작은 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도서학교 운영비 지원
	원도심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추가 지원
	섬지역 소규모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운영
	읍면지역 찾아가는 코딩융합교육
	소규모·원거리학교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예술마당
	찾아가는 읍면지역 아트스쿨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 운영
1-1-2.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지원 행정실무원 배치 확대 운영
	교장공모제 내실화
	농어촌 순회교사제 운영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인사 우대
1-1-3. 통학버스 운영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1-2-1.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교육급여 지원
	아우름정보화 지원
	수학여행비(저소득층, 다자녀가정) 전액 지원
	고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저녁급식비 지원
1-2-2.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1-2-3.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

세부과제	2023년 추진사업명
2-1-1. 공공놀이터 설립 추진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
2-2-1.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읍면지역 초·중·고 학생 배치 여건 개선
	원도심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원도심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3-1-1.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학습 지원
	학습부진학생 개입 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 상담 지원
3-1-2.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체험영어캠프 운영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농어촌 일반고 예술학과 운영 지원
3-2-1.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강화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3-2-2.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3-1.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3-3-2.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4) 예산

- 예산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계획하여 집행하려고 하고 있음. 2021년도의 세부과제의 추진사업 예산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예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2021년 자료만 제시하고자 함.

<표Ⅳ-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교육여건 취약 지역학교 운영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강 생 태 학 교 운 영 지 원	물량	4교	4교	3교	3교	3교
	금액	60,000	60,000	30,000	30,000	30,000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 원	물량	8교	8교	8교	8교	8교
	금액	200,000	200,000	160,000	200,000	200,000
농 어 업 인 자 녀 통 학 교 통 비 지 원	물량	593명	700명	700명	700명	700명
	금액	265,869	315,000	315,000	315,000	315,000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 원	물량	3교	8교	4교	4교	4교
	금액	20,000	40,000	20,000	20,400	20,808
작은 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 가 지 원	물량	62교	61교	62교	62교	62교
	금액	627,007	538,665	666,520	696,513	727,857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 영 경 상 경 비 추 가 지 원	물량	4교	6교	6교	6교	6교
	금액	21,523	38,904	35,934	37,551	39,241
도 서 학 교 운 영 비 지 원	물량	6교	7교	6교	6교	6교
	금액	9,000	10,500	9,000	9,000	9,000
원도심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수 업 추 가 지 원	물량	8교	8교	8교	8교	8교
	금액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섬지역 소규모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물량		2교	2교	2교	2교	2교
	금액		8,000	8,000	8,000	8,000	8,000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물량		12교	30교	14교	20교	20교
	금액		7,527	53,720	21,000	26,170	26,484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물량		8교	8교	17교	22교	25교
	금액		9,000	9,000	39,000	41,000	43,000
소규모·원거리 학교 지원 프로그램	물량		27교	13교	29교	29교	29교
	금액		비예산	1,500	1,540	1,580	1,620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학생문화회	물량	7교	6교	3교	6교	6교
		금액	29,662	37,984	37,104	37,291	37,479
	서귀포학생문화회	물량	15교	28교	24교	29교	29교
		금액	125,800	56,700	43,200	78,300	78,300
방학실증문화영	물량		412명	193명	300명	300명	300명
	금액		86,015	91,800	46,300	46,492	46,686

<표Ⅳ-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교원 근무여건 개선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물량		69명	82명	77명	77명	77명
	금액		2,266,400	3,021,208	2,836,988	2,836,988	2,836,988
교장공모제 확대	물량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금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농어촌 순회교사제 운영	물량		198명	223명	243명	250명	250명
	금액		360,780	138,600	145,800	150,000	150,000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인대	물량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금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마을학교선생님 제도 운영	물량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금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표Ⅳ-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통학버스 운영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안전복지과	물량		6교	6교	6교	6교
		금액		378,000	378,000	378,000	378,000
	제주시교육지원청	물량	11교	9교	9교	9교	9교
		금액	83,971	67,513	67,513	69,513	71,51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물량	14교	10교	10교	10교	10교
		금액	138,812	85,537	87,537	89,537	91,537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물량	3교	1교	2교	1교	1교
		금액	498,000	220,000	365,500	120,000	120,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물량		5교, 6대	2교, 2대		
		금액		821,670	334,550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제주시 교육지원청	물량	3대	55교	55교	55교	55교
		금액	53,349	30,498	32,023	33,624	35,30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물량	2대	54교	54교	54교	54교
		금액	110,546	29,970	15,340	15,494	15,647

<표Ⅳ-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	물량	188교	188교	188교	188교	188교
	금액	3,893,300	3,883,210	3,760,770	3,760,770	3,760,770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사	물량	106명	330명	200명	200명	200명
	금액	208,237	990,000	600,000	600,000	600,000
교육 급여 지원	물량	5,454명	5,847명	5,906명	5,900명	5,900명
	금액	2,235,299	2,137,071	2,103,041	2,120,123	2,142,738
아우름 정보화 지원	물량	3,5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금액	1,170,360	940,510	980,280	980,283	980,286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물량	4,556명	6,003명	4,936명	1,465명	1,546명
	금액	1,432,405	1,216,565	1,423,795	65,925	69,570
저소득층 및 다자녀 저녁급식비 지원	물량	734명	1,086명	3,363명	3,437명	3,557명
	금액	310,674	605,150	1,735,308	1,773,492	1,835,412
저소득층 및 다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물량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금액	300,000	710,940	789,605	770,750	791,445

<표Ⅳ-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장애학생 교육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물량	679명	623명	740명	740명	740명
	금액	467,191	432,117	744,760	744,760	744,760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물량	147명	19명			
	금액	4,541,324	676,780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유	물량	238명	272명	293명	293명	293명
	금액	1,592,240	1,657,180	2,039,500	2,039,500	2,039,500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물량	826명	910명	1,039명	1,039명	1,039명
	금액	1,199,520	1,314,900	1,624,328	1,624,328	1,624,328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물량	3교, 125학급	3교, 131학급	19명	19명	19명
	금액	1,399,300	1,501,100	27,360	27,360	27,360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	물량	29학급	20학급	18학급	15학급	15학급
	금액	630,000	480,000	227,200	227,200	227,200

<표Ⅳ-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다 교 문 화 학 생 지 원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금액	988,783	1,002,584	688,000	709,000	734,000
탈 북 학 생 교 육 지 원	물량	29명	26명	26명	26명	26명
	금액	31,800	22,450	22,450	22,450	22,450

<표Ⅳ-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공공놀이터 설립 추진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놀이터(기적의 놀이터) 설 립 추 진	물량	2교	3교	3교		
	금액	400,000	600,000	600,000		

<표Ⅳ-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 력 향 상 자 율 학 교 지 정 · 운 영	물량	1교	1교	1교	1교	
	금액	20,000	10,000	10,000	10,000	
맞 춤 형 학 습 코 칭 프 로 젝 트 운 영	물량		63교	63교	63교	63교
	금액		137,000	142,000	142,000	142,000
소규모학교 순회 상담 지원	물량	36교	24교	28교		
	금액	40,000	37,000	비예산		

<표Ⅳ-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연도별 소
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	물량	1교	4교	4교	9교	10교
	금액	20,000	110,000	180,000	405,000	450,000
글로벌 화상 교육 운영	물량	17교	19교	19교	19교	19교
	금액	39,400	37,000	15,200	15,200	15,200
체 험 영 어 캠 프 운 영	물량	245학급	210학급	190학급	190학급	190학급
	금액	171,500	178,500	114,000	118,000	120,000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물량		5교	5교	5교	5교
	금액		15,584	11,688	11,688	11,688
메 이 커 교 실 운 영	물량	52교	60교	80교	80교	80교
	금액	150,000	170,000	225,000	225,000	225,000
STEAM 선도학교 운영	물량		8교	8교		
	금액		80,000	80,000		
예 술 학 과 운 영 지 원	물량	2교	2교	2교	2교	2교
	금액	1,592,876	1,452,000	1,335,241	1,500,000	1,500,000

<표Ⅳ-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 등 돌 보 교 실 운 영	물량	216실	223실	230실	234실	238실
	금액	9,026,576	4,184,135	4,193,306	4,205,606	4,178,666

<표Ⅳ-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 과 후 학 교 운 영 지 원	물량	107교	185교	188교	188교	188교
	금액	10,587,751	6,703,055	5,889,571	5,895,571	5,901,691

<표Ⅳ-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주형 자율학교(다 혼 디 배 움 학 교) 운 영 비 지 원	물량	38교	44교	52교	56교	56교
	금액	1,063,000	1,264,000	1,313,000	1,477,000	1,477,000

<표Ⅳ-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2023년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연도별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세부 추진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 교 지 원 센 터 운 영	물량	41교	92교(원)	145교(원)	145교(원)	145교(원)
	금액	56,058	220,376	1,111,360	1,124,696	1,138,193

5)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교육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교육균형발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농어촌, 도심의 소규모 학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를 위한 교육 발전계획을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로 나누어 큰 틀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세부과제별로 추진사업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세부 추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별로 사업을 분석하여 5년의 장기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비록 농산어촌이나, 작은 학교라는 대상이 전체 사업명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교육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이를 포함하고 있음. 농산어촌의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학교와 학생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가.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요약

1)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함

- 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의 주요 관심사인 농어촌 교육 배려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지역별 종합계획의 명칭과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음
- 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농어촌 교육보다는 작은 학교 혹은 개별 학생들의 인성 혹은 여러 목적으로 농촌유학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에 있는 농어촌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음.

<표Ⅳ-22> 시도별 농어촌 교육활성화 관련 종합계획 명칭 및 주요 내용

지역	시/도	사업명	주요 내용
대전	시	대전형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소규모 학교의 학교간·지역간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
광주	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	특색 있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
울산	시	작은 학교 지원 사업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세종	시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충북	도	작은 학교 활성화 계획	작은 학교 활성화
충남	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전북	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교육여건 개선으로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전남	도	작은 학교 운영 기본 계획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경북	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생 수 증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
경남	도	작은 학교 지원 계획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제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균형발전 추진 계획	지역별 교육의 불균형 개선

2) 학구제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의 학생수 확보 지원하고 있음

- 교육청 단위에서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의 주요 사례는 학구제 혹은 통학구역 확대를 통한 학생수 확보 지원임. 시도별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이 다음 <표Ⅳ-23>에 요약되어 있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인 학생수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유통학구역, 공동학구제, 자율학교 지정 등을 시행하여 입학생 수 증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표Ⅳ-23> 교육청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지역	시/도	사업명	주요 내용
부산	시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운영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 기회 부여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 교육 불균형 해소,
대전	시	대전형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적용	대전형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적용
강원	도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운영	학력 중점 농어촌 학교 육성/ 기숙사 활용 학교 운영의 자율권 강화/ 학력 향상을 위한 단위 학교의 학습지도 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
충북	도	작은 학교 공동(일방) 학구제 운영	인접지역에서 희망지역으로 확대

3) 직접적 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검토 필요함

- 각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농어촌 교육 지원 주요 프로그램 확인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음.
-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편임. <표Ⅳ-24>에는 시도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가 제시되어 있음.
-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반면에 타 지역에서의 직접적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각종 통학 지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정도에 불과함.

<표Ⅳ-24> 시도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

지역	시/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서울	시	농촌유학	농촌 소규모학교 생태체험
부산	시	다문화 학급 대상 SW·AI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
인천	시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운영	학생들에게 생태 친화적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경험
강원	도	작은 학교 통학 여건 개선	도-농간 공동 학구 및 학구 광역화를 추진한 작은 학교로의 통학 지
충북	도	학생 통학 지원	통학버스, 통학택시, 교통비등 지원
충남	도	통학 여건 개선	통학비 자체 부담률 완화 및 방과후 학교 참여 후 귀가 차량비 지원
전북	도	농촌유학	서울지역 초등학생 대상
전남	도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제주	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통학 교통비 지원
제주	도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등

4) 농어촌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지원 확대 필요

- <표Ⅳ-25>에는 교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청과 주요 사업 내용이 요약되어 있음.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내에서 교원 영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중인 교육청은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임.
- 이들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영역에 대한 지원 내용은 관사 개선 및 확충, 복식수업 교사 및 강사 지원, 근무환경 개선, 급식비 지원,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인사 우대 등임
- 교원 영역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중인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음.
- 농어촌 교육의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임.

<표Ⅳ-25> 교육청의 교원 지원 프로그램 사례

지역	시/도	사업명	주요 내용
충북	도	관사 개선 및 확충	관사 개선 및 확충
전북	도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운영 / 순회교사 지원/ 환경개선/ 급식비 지원 등
전남	도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작은 학교 교육자료 개발 보급
제주	도	교원 근무여건 개선	농어촌 순회교사제 운영/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인사 우대

5)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특색 교육과정 운영 지원함

- 학교교육의 핵심이 교육과정이란 점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교육청에서는 농촌 지역에 적합한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여러 작은 학교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음.

<표Ⅳ-26>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사례

지역	시/도	사업명	목적/내용
대전	시	농촌형 작은 학교(초등학교) 모델 개발 운영	작은 학교 모델학교 선정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광주	시	배움과 돌봄이 함께 하는 교육 여건 조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 환경개선 사업
울산	시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세종	시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
강원	도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작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강화/학급 단위 특색 프로젝트 운영 지원
강원	도	작은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충북	도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 문화예술, 학교체육, 진로교육, 독서·인문소양교육, 기타 5개의 사업 중에서 선택 지원
충남	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작은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전남	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경남	도	작은 학교 특색·공동 교육과정 지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
경남	도	작은 학교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작은 학교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농어촌 작은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학생수 부족현상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원 영역임.
-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도시 학생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도시 학생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의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방법으로 농촌의 학교에서 일정 기간동안 농촌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이를 위한 경비 마련은 학생, 학생을 보내는 교육청 및 받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또한 작은 학교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을 구비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작은 학교에 적합한 작은 강당 마련 등이 있으며, 화상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웃 작은 학교와 공동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음.

<표Ⅳ-27>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지역	시/도	사업명	목적/내용
강원	도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도시지역 학교와 강원지역 농어촌 학교 연계를 통한 학생 수 감소 완화
충북	도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공감교실 사업의 25%를 작은 학교에 배정
충남	도	통학 여건 개선	통학비 자체 부담률 완화 및 방과후학교 참여 후 귀가 차량비 지원
충남	도	작은 학교 맞춤형 공간 개선	감성꿈틀 공간 조성,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소규모 체육관 증축/복합시설 구축
충남	도	학교-마을 연계 활동 지원	학교와 마을 연계 사업 지원
전북	도	농촌유학	서울지역 초등학생 대상
전북	도	교육협력 기반 강화	학교와 지역 사회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전남	도	교육여건 개선	섬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문화예술 교실 운영
전남	도	교육 협력 체제 구축	지역사회 연계 협력
전남	도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경남	도	작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지원	교실 재구조화
경남	도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작은 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경남	도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작은 학교 정책 연구 실시
경남	도	작은 학교 나눔 및 홍보 강화	작은 학교 성장 이야기 포럼 개최
제주	도	교육여건 취약지역학교 운영 지원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7)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하고 있음

-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력이 한계를 갖는 것은 학생수 부족 현상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작은 학교들이 함께 수업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음.
- 공동교육과정운영, 작은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내실화 등이 주요 사례임.

<표Ⅳ-28>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지역	시/도	사업명	목적/내용
광주	시	작은 학교 강점을 살리는 교육활동 지원	특색교육활동 지원
충남	도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학교 간 연계·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경남	도	작은 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작은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8)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 지원함

- <표Ⅳ-29>에는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주요 사례가 제시되어 있음.
- 주요 사례에는 농어촌 학교의 운영비 지원 및 집행방식 개선, 조례제정과 업무 지원 조직 운영, 업무경감 지원, 작은 학교 홍보 강화 등이 있음.
- 농어촌 작은 학교이 경우 작은 수의 교직원으로 전체 학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반 행정 업무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수행하는 지원을 통해 학교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임.

<표Ⅳ-29>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지역	시/도	사업명	목적/내용
울산	시	작은 학교 지원 기반 조성	작은 학교 지원 인프라 구축
강원	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한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충북	도	행·재정적 지원	운영비 지원 및 집행방식 개선
충남	도	법과 제도 개선	조례개정/교직원 인사우대 등
충남	도	작은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작은 학교 교무업무지원팀 운영
충남	도	작은 학교 지원단 운영	작은 학교 정책(실무)지원단
충남	도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	충남교육행복지구와 연계한 협력체제 강화
전남	도	작은 학교 홍보 강화	교육력 강화 공감대 확산
경남	도	작은 학교 지원체제 구축	작은 학교 교원 지원단 운영
경남	도	작은 학교 행·재정적 지원 확대	작은 학교(초등) 광역 통학구역 확대/교

			직원 업무경감 지원
제주	도	통학버스 운영 지원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나. 시사점

1) 정책의 포괄성(종합성)

- 정책의 포괄성은 농어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농어촌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임. 농어촌 교육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그림Ⅱ-1]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 교원, 교육재정, 학생, 학습여건 등을 망라하여 정책이 추진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임.
- 서울은 농촌유학, 부산은 다문화 학급 대상 SW·AI 교육 지원,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중학교 위캔두 계절학교, 책과 노는 학교도서관 사업, 대구의 텃밭 조성·운영 지원 사업, 세종의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은 농촌과 관련된 교육정책 중 하나의 사업임. 일부 사업은 농촌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도 있음. 농촌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은 정책의 포괄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농어촌 교육의 부분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는 다르게 대전, 광주,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은 전적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농어촌에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해 많이 기여하는 지원정책임.
- 대전은 작은 학교 활성화 계획으로 농촌형 작은 학교(초등학교) 모델 개발, 공·사립 중학교 활성화,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강화 사업을, 광주는 교육활동 지원, 교육여건 조성, 학교문화 조성, 울산은 작은 학교 지원 기반 조성,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 강화, 작은 학교 나눔과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작은 학교 지원 계획은 작은 학교의 여건 조성, 교육과정, 학교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그림Ⅱ-1]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작은 학교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별시, 광역시는 대도시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만 작은 학교 육성의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농어촌과 도시의 작은 학교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표Ⅳ-30> 시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교육청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서울	• 농촌유학 추진 계획
부산	• 다문화 학급 대상 SW·AI교육 지원 사업 •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운영 계획 • 중학교 위캔두 계절학교 운영 계획 • 원도심·서부산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과 노는 학교도서관 사업계획
대구	학교텃밭 조성·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인천	가족채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전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광주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계획
울산	작은 학교 지원 종합 계획
세종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교육부 특교 사업 대행)

- 같은 맥락에서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표Ⅳ-31> 도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교육청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지원 조례
경기	•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평가 및 질 관리 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강원	•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 작은 학교 통학 여건 개선 •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운영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 유학 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충북	•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 계획	•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 전남형 작은 학교 운영 기본 계획 •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 계획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섬지역 교육진흥 조례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북	• 초·중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계획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경남 작은 학교 지원 계획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 교육균형발전 추진 계획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경기, 강원, 경북은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평가 및 질 관리와 농촌 유학, 자유 학구제 운영을 농촌 지원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의 한 부분에 한정됨. 강원도교육청은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작은 학교 통학 여건 개선,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 유학 계획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농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적인 정책임. 많은 교육청에서 농촌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을 살펴보면 전북은 농어촌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은 작은 학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제주는 교육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농촌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음. 농촌교육의 문제를 부분적인 사업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음.
- 전북, 충북, 충남, 전남, 경남교육청은 농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음. 농촌 유학이나 자유학구제 운영과 같이 부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농촌학교나 작은 학교가 처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종합적인 접근의 기본 틀은 농촌이나 작은 학교의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 구축의 3개 축임. 하나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여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운영이 잘 마련되어야 함. 교육의 여건과 교육과정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잘 맺어야 모든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전북, 충북, 충남, 전남, 경남교육청이 농촌과 작은 학교가 갖는 문제를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음. 제주교육청은 교육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책을 수립하여 농촌과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 정책은 농촌교육이나 작은 학교 지원사업보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 할 수 있음. 농촌교육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독자성

- 정책의 독자성은 교육청이 교육청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정도를 의미함

- 그동안 농어촌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농어촌 우수교 사업, 돌봄학교, 전원학교, 적정규모화 사업 등이 교육부 중심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작은 학교 지원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균형발전 계획 등은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작은 학교,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3) 정책의 대응성(주민의 요구 수용도)

- 정책의 대응성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력과 지원,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V.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 관련 조례 분석

1. 시 농어촌교육 관련 조례

가. 서울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9. 3. 28. 제정

나) 목적

-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 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부산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1. 7. 14 제정

나) 목적

- 부산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계획 수립

-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함
-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 작은 학교 설립 목표 및 기본방향
 - 학생 과밀지역 현황 및 작은 학교 설립 수요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작은 학교의 운영

-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분교 형태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작은 학교의 교직원, 시설, 행정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함
- 작은 학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 실태조사

- 교육감은 제5조의 설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역의 택지개발 현황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 또는 여론수렴 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설립자문위원회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함
 - 작은 학교 설립 타당성 및 대상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따른 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0. 12. 29. 제정. 2023. 10. 11 전부 개정

나) 목적

- 부산광역시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육력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교육감이 정하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계획 수립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균형발전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이전단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 운용에 관한 사항
 -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실태조사
 -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와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격차 지표 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하여야 함
 -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를 통해 교육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보완·변경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 사업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함
 - 학력신장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 교육기관 균형 배치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 취약계층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
 - 집중육성학교 운영·지원 사업
 - 우수교원 배치 등 교육인적기반 강화 사업
 - 교육·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지역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 집중육성학교 운영
 -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취약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집중육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집중육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선정기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우수교원 배치
 -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역 및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포상, 또는 학교 실정에 적합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성과평가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교육감은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시의회 보고

-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함
 - 교육격차 지표에 기반한 교육격차 실태 및 추이
 - 성과평가 결과

다. 대구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2. 2. 28. 제정

나) 목적

- 대구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 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인천

1)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가) 제정 연혁

- 2006. 4. 3. 제정. 2023. 2. 27. 일부 개정.

나) 목적

-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구성

-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세계시민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함
- 위촉위원은 농어촌의 교육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함

○ 기능

- 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함
 -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지역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지역교육발전협의회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함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회의, 간사, 실무협의회,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교육 지원 정책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생략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2)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8. 1. 2. 제정

나) 목적

-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마. 대전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2. 4. 15 제정.

나) 목적

-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기본 계획
 -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안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

- 교육과정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 지역사회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 교육복지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 학교 현대화사업
 -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교육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원
 -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예산의 지원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함
 - 학생 전입 방안
 -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을 할 수 있음
 - 협력체제 구축
 -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바. 광주

1) 광주광역시 작은 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1. 8. 11 제정. 2023. 5. 30 타법개정

나) 목적

- 광주광역시 작은 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시행계획 수립
 - 교육감은 작은 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원 사업
 - 교육감은 작은 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 방과후학교 운영비
 - 체험학습활동 운영비
 - 교육환경 개선비
 -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운영비
 -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 그 밖에 작은 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 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농촌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한 농촌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 설치
 -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심소규모학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교육감은 작은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 울산

1)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0. 12. 24. 제정

나) 목적

-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
 - 사업 선정 및 지원 절차·대상·규모
 -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사업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 학생 통학 편의 제공
 -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都農) 교육 교류
 - 학부모 및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육 활동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방법
 -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대상·규모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예산 확보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작은 학교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학생 전입 방안
 - 교육감은 학생 전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표창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0. 4. 2. 제정

나) 목적

- 울산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

-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함
-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
-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감은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 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
 -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3. 11. 20. 제정

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사업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학생 통학 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방법
 -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보건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학생 전입 확대 방안

-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협력체제 구축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1. 11. 10. 제정

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도 농어촌교육 관련 조례

가. 경기

1)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4. 4. 4 제정. 2018. 4. 10 일부 개정

나) 목적

- 경기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사업 계획

-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사업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신설 2018.4.10.>
 -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방법
 -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
- 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함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교직원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함
- 학생 전입 확대 방안
 -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 특례 적용

-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민교육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평생교육과정의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함
 - 작은 학교의 장은 작은 학교 시설을 인근 주민의 평생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표창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음

2)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0. 1. 10. 제정

나) 목적

- 경기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 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강원

1)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3. 5. 10 제정. 2023년 6. 2 일부 개정

나) 목적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다) 주요 내용

-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항
 - 작은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사업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 교육 교류 사업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방법
 -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도

- 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직원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의 부여, 업무 경감 지원 등에 있어 우대 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에 노력해야 함
- 학생 유입 방안
 -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군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함

다. 총복

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2. 7. 6. 제정. 2017. 3. 17. 타법 개정

나) 목적

다) 주요 내용

- 사업 계획 수립·시행
 -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감과 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원 사업
 - 교육감은 지원대상 작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학생수 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지원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도협의회 및 교육지원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다만,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위원 및 임명위원에는 농·산촌지역의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도 및 농·산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추진 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육감과 교육장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작은 학교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작은 학교에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

- 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작은 학교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초빙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원의 근무기간
 -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 기간은 4년으로 함
- 교직원의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업무 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농·산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충남

1)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5. 4. 10. 제정. 2021. 9. 30. 일부 개정.

나) 목적

- 충청남도 소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 계획

-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방법지원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동일 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 운영
-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 지원 사업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방법
 -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음
- 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교직원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해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할 수 있음
-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종합계획
 -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 지원사업 및 대상학교 선정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원활한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음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1. 2. 22. 제정

나) 목적

- 충청남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균형 배치

-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
-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
 - 교육균형발전사업 성과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마. 전북

1)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7. 1. 31 제정. 2023. 11. 10. 타법 개정

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사업 계획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 안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 방법
 -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교직원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

- 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 학생 전입 확대 방안
 -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기본 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5. 1. 30. 제정. 2023. 9. 22. 일부 개정.

나) 목적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찾아오는 농산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교육감은 농산어촌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목표
 - 농산어촌 교육발전 종합계획
 -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 농산어촌학교 교육진흥과 교육환경의 개선 및 발전
- 다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만들기
-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학부모, 관련 단체,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농산어촌 자율학교의 운영
 -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농산어촌 자율학교는 해당 학군 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학·전학을 허가하여야 함
- 교육지원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한 학년 6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농산어촌학교에 복식학급을 둘 수 없음. 다만, 가능한 한 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한 복식학급을 두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 확보 및 배치
 - 농산어촌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을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음
- 농산어촌학교의 폐교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전에 그 사유를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함
 -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산어촌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 다만, 의견수렴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함
- 농산어촌 학생 통학 편의 지원
 - 교육감은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 버스 지원 등 통학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감은 찾아오는 농산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급 학교와 유학생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1. 7. 9. 제정

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도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감은 지역·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예산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전남

1)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8. 3. 29. 제정

나) 목적

- 전라남도 내 작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교육장은 종합계획에 딸 작은 학교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교육장과 교육감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지원 사업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학생 통학 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활동
- 지원 방법
 -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수 있음.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지원사업의 협의
 - 작은 학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함
 -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전입 확대 방안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 함
- 교직원의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근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2)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0. 10. 8. 제정

나) 목적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공교육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기본 계획
 -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유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본방향과 목표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협력체계 구축
- 농산어촌유학 홍보

○ 사업

-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및 운영
 -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 지원

-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연구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교시설 신설, 개축,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어촌유학정책협의회를 둔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 연구학교 지정·평가·해지
 -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 농산어촌유학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교육감은 협의회의 기능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농산어촌유학원 설치·운영

-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3)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1. 5. 13. 제정

나) 목적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방향 및 목표
 - 지역별 교육 여건 분석
 -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표 개발 및 관리
 - 사업 추진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개선
 -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사. 경북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0. 12. 21. 제정

나) 목적

- 경상북도 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예산 확보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
 -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아. 경남

1)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20. 1. 2 제정. 2022년 7. 7 일부 개정

나) 목적

-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다) 주요 내용

- 사업계획
 -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사업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방법
 -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상 학교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함
- 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교직원 우대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함
- 학생 전입 방안 확대

-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교육감은 학생전입 확대를 위하여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 편의제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를 본청에 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교육감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표창
 -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음

자.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가) 제정 연혁

- 2015. 3. 5. 제정

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원도심학교 및 작은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 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도지구의 지정

-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집중육성학교의 소재 여부
 -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변화율
 - 지역별 소득수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이전
 - 가. 2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전
 - 나.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이전

- 그 밖에 교육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 도교육감은 선도지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
제할 수 있음
- 지역발전협의회의 지원
 -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선도지구별로 조직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해당 선도지구 소재한 학교장
 - 해당 선도지구 소재한 읍·면·동장
 - 해당 선도지구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그 밖에 교육환경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음
 - 도교육감은 잡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중육성학교를 지정하며, 지정
된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집중육성학교에 대한 지원
 -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
 -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사업
 -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농어촌 유학 및 도시와 농촌 교육 교류사업
 -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교직원의 적정 수 배치
 - 교장 공모제 실시
 - 초빙교사제 및 근무 희망자 우선 배치
 - 행정공문 발송 및 보고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경감
 -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 교직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
음

- 포상 추천
-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 농어촌 주거 편의 제공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함
- 학생 전입 확대 방안
 -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로의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하여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경비보조
 -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별로 연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음
 -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학생 체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협력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3. 농어촌 교육 관련 조례의 시사점

- 농어촌 교육 관련 조례는 농어촌 교육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구분될 수 있음
- 농어촌 교육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이고,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전북의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임.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이에 해당되는데 제주를 제외하고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이를 집행한 성과가 거의 없음.
- 전북교육청이 제정하고 있는 작은학교 지원, 농산어촌 교육발전, 교육균형발전 등의 사업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전북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반면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조례의 중복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조례를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표Ⅳ-32> 시의 교육지원 조례

교육청	농어촌 교육지원 조례
서울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산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인천	•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대전	•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광주	• 작은 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관한 조례
울산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세종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표Ⅳ-33> 도의 교육지원 조례

교육청	농어촌 교육지원 조례
경기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강원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충북	•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섬지역 교육진흥 조례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북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Ⅵ. 요약 및 제언

1. 요약

-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가 추진되었음.
-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농어촌 교육을 위해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분석하였고, 농어촌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정책을 위한 조례를 분석하였음.
- 농어촌 교육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학교의 현황,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접근 전략, 농어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원리, 분석의 틀을 정리하였음.
- 농어촌 학교의 현황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1965년의 4,940, 천명에서 2023년의 2,603 천명으로 2백 3십만명 가량이 줄어듦. 이런 현상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호남, 강원권이 더 심함. 이에 따라 농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명 이하의 학교가 농촌학교의 11.0%이나 되고 61명 이상 되는 학교는 46.14%임. 농촌학교의 절반 이상이 60명 이하의 학교임.
-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해야 할 전략을 정리하면 자연주의적 접근, 규모의 경제적 접근, 교육복지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자연주의적 접근은 농어촌이 가지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임. 도시와 단순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모델임. 규모 경제적 접근은 소규모 학교의 단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정규모화를 시켜 경비를 줄이려는 접근방법이고, 교육복지적 접근은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축소하려는 교육배려적 접근 방법임. 이들 세 접근 방법은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기보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해야 할 방법임.
- 농어촌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의 원리,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농어촌 교육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성의 원리, 격차와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의 원리 등이 적용되어야 함. 아울러 농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수성 및 자율성의 원리와 변화에 적응할 수 있

는 대응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교육정책 분석은 종합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여건 지원 영역에서 행정, 교원, 교육과정, 학생, 학습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교육활동 지원 영역에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교육성과 확인 영역에서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행복도가 고려되어야 함.
-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국가는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국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음.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문맹퇴치, 개건학교 등을 통해 농어촌 계몽운동을 하였고,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비롯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서벽지 진흥, 학교 급식 우선 실시, 농어촌 학교시설 개선 사업, 통학버스 지원,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 전형 등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규모 육성사업, 학교군 사업, 지역거점학교 사업, 1군 1우수고 육성 사업, 돌봄학교, 전원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2010년대 이후에는 교육청 중심의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작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시·도 교육청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와 도가 다르고 시와 도의 경우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의 경우는 농어촌 학교가 없거나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농촌유학 추진이나 대구의 텃밭가꾸기 사업, 인천의 가족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음. 일부의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의 작은 학교 뿐만아니라 도시의 작은 학교를 포함하여 이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전, 광주, 울산이 이에 해당됨. 세종은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운영 주관교육청인데 이를 사업계획서로 제출하였음. 세종시교육청이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출할 사례임.
- 도의 경우도 시와 유사하게 농촌관련 사업 일부만 제출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청이 작은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작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교육청이 농어촌교육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농어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부분적인 정책과 농어촌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교육 정책이 이에 해당됨. 반면에 농촌교육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교육청은 대전, 울산, 광주, 전북,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이라 할 수 있음. 농촌교육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조례도 농촌 교육정책과 같이 농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있고, 농촌교육과 작은 학교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있음.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조례임. 이렇게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할 여러 조례가 동일 대상, 동일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전북교육청의 경우 농촌의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음.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육균형발전의 지원 대상이 농촌의 작은 학교 만은 아니지만 대상 학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조례의 중복이 되고 있음. 대부분의 교육청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복되는 항목이 많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발전 조례, 작은학교 지원조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사안을 수행하는데에도 기준이 달라 혼란을 가져오기도 함. 농촌 작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큰 학교 학생을 인접 농촌의 작은 학교가 전입 받는 공동학구제(자유학구제, 일방학구제 등 명칭이 다양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강원과 경북의 경우는 통학버스를 증차하여 공동학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여유 좌석의 범위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학생 전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2. 제언

-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가. 국가 수준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1) 지속성과 전국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은 매우 합리적이고 양호한 수준에서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속성의 측면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과 농어촌 교육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해 보면 일관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됨. 농어촌 교육지원 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지역 간 일관성 확보 필요함.

2) 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함

- 본 연구의 작은 학교 및 학생 통계 수치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공동으로 지원해야 함. 특히, 3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헌법적 권리라 할 것임. 따라서, 이들의 교육적 차별 현상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3) 경쟁 중심의 차별적 사업 방향에서 일반 혹은 선택 중심 사업 체제로 전환

- 농어촌의 작은 학교의 지원 사업은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혹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선택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함. 작은 학교에 대한 경쟁 중심의 지원 사업 구도는 일부 선정된 학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농어촌 학교 발전 맥락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합리적 접근임.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선정되지 못한 학교와 학생의 역차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큰 그림에서 농어촌 학교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함. 즉, 농어촌의 학교들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 중심의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지원 혹은 선택 중심 사업체제로 접근해야 함.

4) 농어촌 학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농어촌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농어촌 교사 배출 가능성이 있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다학년 구성 학급 경영론, 복식학급 교재개발 및 교과지도법, 지역사회의 이해 등과 같은 농촌교육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함. 둘째, 학교 현장실습을 위해 농어촌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직 교원의 경우,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농어촌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도시에 근무하던 교사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인사명령만으로 농어촌 학교로 배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교원배치 절차라 할 것임. 교장자격연수와 각종 교원연수에서 농어촌 학교 교육의 전문성 부분을 강화해야 함. 특히 농어촌 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지역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들을 농어촌 학교 배치 전에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함.

5) 농어촌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학교 모델 개발 및 적용

- 농어촌의 학교는 그들의 상대 학교인 도시의 학교들과는 매우 다른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어촌 학교가 도시 학교와 서로 다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주어야 함. 즉,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자유롭게 학교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함. 농어촌 학교의 자율권 확대는 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처럼 농어촌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교경영 및 관료제적 관리의 틀에 갇혀서 실질적 효과 없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자율성’을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농어촌 학교가 진정 필요한 자율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가능하게 해 줄 것인가와 관련된 소위 ‘농어촌 자율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6)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위기대응 계획 수립함

-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될 필요 있음. 갑작스런 가정적 혹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으나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경우의 학생들이 있음. 이들을 적시에 보호하지

못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그들을 적시에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일종의 아동 위기 대응 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는 농어촌 학생뿐 아니라 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임.

나. 지역 교육청 수준의 농어촌 교육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1) 시·도교육청의 조례 정비 필요성

- 농어촌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례의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함. 농어촌교육이나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이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음. 이들 조례 등이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상은 작은 학교가 대부분임. 작은 학교와 농어촌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조례를 정리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

-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일부 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을 위한 부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농어촌 학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의 학교나 작은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농어촌교육의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모두 포괄되는 농촌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함.

3) 농어촌 지원 방안의 지역 간 일관성 확보 필요성

-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음. 예컨대 공동학구제(공동학구제, 일방학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과 방법이 교육청마다 달라 혼란을 겪고 있음. 어떤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지원이 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아 공동학구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이나 규칙이 마련된다면 어려움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4) 학교 규모를 반영한 차등화된 지원 정책 수립

- 학교의 학생수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60명 이하의 단위학교 당 학생수는 약 34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60명 이상 학교의 단위학교 당 학생수는 약 343명 정도임. 따라서 같은 읍이나 면지역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정교한 농어촌의 학교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특히, 20명 이하의 재학생을 가진 학교가 271교로 전체 농어촌 학교 학생의 약 0.9%인 3,919명이 재학하고 있음. 이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함.

5) 농어촌 작은학교의 우수 사례 적극 홍보 및 확산 노력 지속

- 여러 교육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단위에서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공유함. 지금도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들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수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을 주변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함.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21-20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유학 계획.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2023).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평가 및 질 관리 계획 (안).
-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2021-2023). 작은학교 지원 계획.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2021-2023). 초·중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2021-2023).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계획.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2022).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지원.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2023). 2023년 학교텃밭 조성·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2022).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 박삼철 (2005). 호주의 농어촌 교육 육성정책. *교육행정연구*, 24(4), 118-138.
- 박삼철 (2008). 농산어촌우수고 사업 평가: 의의, 문제점 및 과제. *한국교육*, 35(2), 173-193.
- 박삼철(2011a). 농촌교육복지연구. 서울: 집문당.
- 박삼철(2011b). 농산어촌 유형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농산어촌 교육정책. *교육행정학연구*, 29(4), 253-273.
- 박삼철(2012).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4), 103-122.
- 박삼철(2014). 학교통폐합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2(4), 1-21.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과(2023). 2023학년도 원도심·서부산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과 노는 학교도서관」사업 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년 다문화 학급 대상 SW·AI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2023). 2023학년도 중학교 위캔드 계절학교 운영 계획(안).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022). -큰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작은학교 자유통학구역 확대 운영 계획(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2020-2023). 농촌유학 추진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3). 2023년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문화예술교육 지원 변경 계획(안).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작은학교 지원 종합 계획.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2015). 교육행정학 원론 제6판, 서울: 학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2022). 가족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안).

임연기, 박삼철 (2005).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보고서.

임연기, 박삼철, 최준열, 임선하 (2007). 농산어촌 교육발전 방안 연구 (I)-농산 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 계획.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형 작은학교 운영 기본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2021-2023).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안).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2021-2023). 교육균형발전 1단계(2019-2023년)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안).

최준열·강대중(2007).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교육인적 자원부.

충청남도교육청(2022). (2022-2026)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 종합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2021-2023).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2021-2023).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Gottfredson, D. C. & Dipietro, S. M. (2011). School size, Social Capital, and Student Victimiz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4(1), 69-89.

Sergiovanni, Kellerher, McCarthy, & Wirt(2004).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5th. ed.). Boston: Pearson.

통계자료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1. 전라북도교육청 내부자료.

충청남도교육청(2023). 2023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충청남도교육청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2003) (<https://kess.kedi.re.kr>). 자료 내려받은 날짜: 2024.02.15.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작은학교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 규칙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농어촌 교육정책 운영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발행: 2024년 3월

발행처: 공주대학교 교육나눔

연구책임자: 최준열, 공동연구원: 박삼철, 연구보조원: 강윤정

인쇄처: 선명인쇄소
